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지속가능한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위한 제언
박철성

현안분석

가구 소득분포 고려 여부에 따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
강신혁

특집

2025년 세계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문건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디지털 자산 증개인 보고 관련
전환유예 조치 연장 및 확대 외

2025년 세계개편안 평가
오종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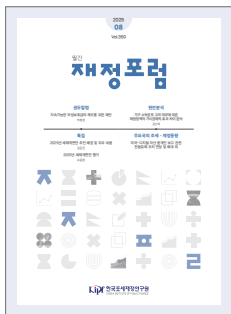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8월 18일 발행

통권 제35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조혜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제작	길민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지속가능한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위한 제언

박철성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현안분석

10

가구 소득분포 고려 여부에 따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

강신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특집

34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문건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오중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58

미국-디지털 자산 중개인 보고 관련 전환유예 조치 연장 및 확대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지속가능한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위한 제언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cheolsung@hanyang.ac.kr

지속가능한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위한 제언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근 나타난 저출산의 반전

우리나라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현상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저출산 고령화를 꼽겠다.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인구의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2050년경에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약 10년간 계속 추락하던 우리나라의 출산율,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최근에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4명을 기록한 후 2023년 0.72명을 기록할 때까지 매년 내려가기만 했던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75명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출생아 수도 2015년 438,420명에서 2023년 230,028명으로 매년 줄기만 했는데, 2024년에는 238,300명으로 전년보다 3.6%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도 동기보다 6.9% 늘었다고 한다. 혼인 건수는 2011년의 329,087건에서 2022년의 191,690건까지 매년 감소하였다가 2023년 193,657건, 2024년 222,412건으로 2년 연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도 전년도 동기보다 6.7%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확대

최근의 이런 반전에는 그동안 강화되어 온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이제 유럽의 복지국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1인당 부와 모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부모 각각 최대 240일(배우자에게 일부 이전 가능)의 두 배가 넘는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자가 올해 1년 동안 육아휴직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월평균 192만 5천원을 받아 소득대체율이 64.2%가 된다. 이는 작년의 50%에서 크게 인상된 것이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쓴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4%까지 오르게 된다. 이런 소득대체율은 OECD의 대부분 국가와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다. 지원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 사용자도 계속 늘어서 2015년에 13만 6천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19만 6천명에 달하였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8천명에서 5만명으로 6배 넘게 증가하였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증가

출산 지원 확대와 사용자 증가는 재정 지출 증가를 불러왔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모성보호급여’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된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02년에 260억원 정도로 시작해서 2010년에는 3,700억원, 2020년에는 1조 5,600억원으로 커졌고, 2024년에는 2조 5,700억원에 달하였다. 고용보험의 사업비 지출 총액 대비 모성보호급여의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7.6%였으나, 2024년에는 13.8%로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조 9,600억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연말까지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직 50% 미만인데,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촉진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는 또 다른 지출 증가 요인이다. 이는 이미 심각한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작년 말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7조 7천억원을 포함해도 3조 5천억원에 그쳤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변화가 없는 한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이 내년 말에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모성보호급여를 위한 계정을 분리하고 보험료를 따로 징수하여 실업급여계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성보호급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고용보험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함께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먼저 지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계정에서 분리하여 별도 계정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성보호급여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능력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모성보호급여를 위한 계정을 분리하고 보험료를 따로 징수하여 실업급여계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20년에 모성보호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 0.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예가 있다.

모성보호급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01년에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시작할 때 모성보호급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책임진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최근에 증액되어 2020년에 와서야 급여액의 10%를 조금 넘었고, 2024년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4천억원으로 급여액의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새 정부의 신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모성보호급여 지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 모성보호급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사가 함께 주장했던 내용이다. 설사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국가재정 상황상 전입금의 확대에는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 체계 안에 있는 한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고용보험에서
떼어낸다면
자영자나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이외 집단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영훈 장관의 의견과 관련하여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계속 고용보험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고용보험에서 떼어낸다면 자영자나 플랫폼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이외 집단도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성보호급여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일반을 위해 '부모 보험'과 같은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성과와 비용을 확인하고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도 아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확대되어 온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즈음이 사업의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옥석을 가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 

현안분석



가구 소득분포 고려 여부에 따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shinkang@kipf.re.kr

가구 소득분포 고려 여부에 따른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차이 분석¹⁾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가구 소득분포를 고려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학술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unctional Vector Auto-Regression, 이하 fVAR) 모형을 활용하여 가구 소득분포를 고려한 경우와 거시경제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간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소 엄밀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기술하자면 본고에서는 소득 불평등 정도와 거시경제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최근 2025년 5월 1일과 7월 4일에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각각 13.8조원, 31.8조원 규모로 제 1·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²⁾ 또한 정부는 같은 목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였다. 이는 재정정책이 결과와 무관하게 적어도 과정에서 소득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정정책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거시적 총량 지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주로 총량지표만을 활용한 재정승수를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GDP, 고용 등과

1) 본고는 Lee and Kang(2025) 연구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승희 박사(KDI)께서 매우 큰 기여를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귀중한 제언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고에 있을 수 있는 오류는 오직 저자의 것이며, 본고의 의견 역시 오직 저자 개인 의견임을 밝힌다.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5. 1.),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 7. 4.),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재정정책을 분석할 때 소득분포와 거시경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거시경제지표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승수는 당연히 학술적·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를 사례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소득분포와 거시경제변수 간 관계를 본 연구는 저자가 아는 바로는 본고에서 소개하는 연구가 처음이다.

거시경제학에서 자료를 실제 활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연구 대다수는 집계/거시시계열 또는 국가별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³⁾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불평등 완화라는 점, 그리고 소득 등 개인/가구 단위 경제상황 분포와 거시경제 간 상호작용-평등한 경제와 불평등한 경제 중에서 통화정책/재정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 -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을 분석할 때 소득분포와 거시경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중요하다.⁴⁾

기존 문헌에서 거시경제 동학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때 횡단면 소득분포를 고려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로 불리는 기술적 제약이었다. 이론적으로 소득분포는 무한차원을 가진다. 따라서 표본 수가 충분히 크더라도 해당 무한차원 정보를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축약·표현할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대안 중 함수적 주성분 분석(Function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하 FPCA)을 차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직관적으로 FPCA를 통해 추출한 소득분포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 이하 VAR) 모형의 설명 및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Chang et al.(2024)와 같이 이러한 방법론을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unctional VAR, 이하 fVAR) 모형이라 부른다. 요약하면, fVAR 모형은 기존 VAR 모형에 거시경제 변수와 FPCA를 통해 축약된 소득분포의 주요 요인을 함께 포함시켜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다수 실증분석 연구는 경기변동과 무관한 정부지출의 순수한 구조충격을 식별하고자 하는 시도들로 이루어졌다. 이질적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소득/자산 분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재정정책/통화정책 등의 분포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모형, 즉 모형경제를 시뮬레이션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4) 혼돈을 막기 위해서 명시하지만 아직까지 fVAR 모형 등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 정도에 따라 재정정책/통화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Chang and Schorfheide(2024)에서 논의되었듯이 아직 가능한 방법론이 논의되지 않았다. 구조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HANK)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Ma(2023)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더 평등한 경제에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을 보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 분포와 거시경제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간 재정정책 충격이 집계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Chang et al.(2024), Bayer et al.(2024) 등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Auclert and Rognlie(2020)가 구조모형을 통해 보인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과 총생산 간의 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발생 원인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문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같이 보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과 총생산 간 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같이 FPCA를 활용하여 횡단면 소득분포 정보를 VAR 모형에 적용한 사례로는 Chang et al.(2022)이 있다. 이 연구는 통화정책, 정부지출, 개인소득세, 유가 변동 충격이 단기 및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기대를 평균이나 중위수와 같은 단순 모멘트가 아니라 마이크로데이터로부터 추정한 개별 경제주체의 기대 분포로 측정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문헌이나, 본 연구가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분포의 반응 자체가 아니라 분포 정보가 집계총량의 전파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유사한 연구로는 Chang and Schorfheide(2024), Chang et al.(2024), Ettmeier(2024) 등이 있다. 특히 Chang et al.(2024)과 Chang and Schorfheide(2024)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횡단면 소득분포 정보와 집계총량 동학 간 관계를 fVAR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HANK) 모형을 활용하여 분포와 거시집계 변수 간 동학을 분석한 연구로는 Auclert and Rognlie(2020), Bayer et al.(2024)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단기나 경기변동 주기에서는 분포적 정보와 소득분포-집계동학 간의 관계가 미약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만, Auclert and Rognlie(2020)는 구조모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소득불평등과 총생산 간의 부(-)의 관계가 소득불평등 발생 원인에 따라 정량적으로 유의할 수 있으며,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정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제III장에서는 fVAR 모형 분석 주요 결과를 논의하였고, 제IV장에서는 정책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과
총생산 간
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활용한

거시 시계열 자료는

크게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구축하였다.

II 자료 및 방법론

본 장에서는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본고는 거시 시계열 자료와 미시 (반복) 횡단면 분포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재정지출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재정지출, 국세수입 등 재정승수 추정에 필수적인 거시 변수와 더불어, 각 시점에 대응하는 소득의 횡단면 분포 자료가 함께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자료의 구성과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분석에 활용한 함수적 벡터 자기회귀(functional Vector Auto-Regression, fVAR) 모형을 소개하고, 구조적 충격을 식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 거시 시계열 자료: 국민계정, 통합재정수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본고에서 활용한 거시 시계열 자료는 크게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구축하였다. 거시 시계열 자료와 미시 분포 자료 모두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활용한 기간은 2000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이다. 후술하듯이, 보통 자료 가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미시 데이터에 해당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구계열 기준으로 1990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전후로 한국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 통상적으로 거시 시계열 분석 문헌이 2000년부터 많이 다루었다는 점 등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2000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고려하였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는 실질 GDP, 실질 정부소비지출,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을 활용하였다.⁵⁾ 실질 GDP, 실질 정부소비지출,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은 공표된 계절조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후술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의 정부수입과 지출 자료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2015년이 기준연도인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정부지출을 측정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강건성 검정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여러 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또한, 이진지출을 제외한 정부소비지출과 정부총고정자본형성(이하 정부투자지출) 지출 간 합을 기준모형에서 다루었으며, 여기에 통합재정수지에서의 가계경상이전 자료를 합한 경우를 강건성 검증을 위해 같이 고려하였다.

5) 자료는 모두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하 KOSIS. 접속일자: 2025. 6. 21.)로부터 추출하였다.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서 발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현재 KOSIS에서 1999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표되어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월별 자료로 공표되며, 본고에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의 총수입, 총수입 중 경상수입 항목인 국세수입, 그리고 경상지출 중 가계경상이전을 이전지출로 활용하였다.⁶⁾ 통합재정수지는 국민계정과는 달리 실질/계절조정 지표를 공표하지 않는다. 특히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에서 누적된 재정수지를 공표하기 때문에 계절성이 매우 뚜렷하게 관측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월별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변환하여 국민계정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변수들을 실질화시킨 뒤에 X-12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계절조정을 하였다.⁷⁾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지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를 제외한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공휴일이 연속 3일 이상 포함된 경우 이전 주로 변경) 조사하여 노동공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기반 노동통계이다. 전국 3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자료와 유사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노동통계이다. 본고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상기 변수들을 1인당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KOSIS에서 공표되는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총괄(1999년 6월~2025년 5월)에서의 15세 이상 인구를 이용하여 1인당 변수로 변환하였다.⁸⁾ 1인당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다른 인구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등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위 거시변수와 일관되게 분기 단위 계절조정 지표가 공표된다는 점, 그리고 15세 미만 인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인구 전체 규모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고려되는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⁹⁾ 모든 거시시계열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에서 누적된 재정수지를 공표하기 때문에 계절성이 매우 뚜렷하게 관측된다.

6) 총수입은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의 합이며, 경상수입은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세수입은 소득세 및 이익세, 재산세, 재화 및 용역, 관세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총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지출은 재화 및 용역, 국내외 이자지급, 보조금 및 경상이전(보조금, 지방정부경상이전, 비영리기구경상이전, 가계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7) 당해연도에서 각 월별 자료는 누적자료이기 때문에 각 분기 마지막 월 자료를 분기자료로 변환하였다. 평균 등 다른 변수로 활용하여도 결과는 유사하다. 또한 GDP 디플레이터 대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연도)로 실질화하여 강건성 검정을 해보았으며, 결과는 유사하였다.

8) KOSIS 접속일자: 2025. 6. 21.

9) 통합재정수지 변수를 1인당 변수로 변환시킬 때, 실질화를 먼저 시킨 뒤 계절조정을 하고 그 뒤에 계절조정된 15세 이상 인구를 이용하여 변환하였다. 15세 이상 인구를 원자료로 하여 실질화 및 1인당 변수로 먼저 변환시킨 뒤 계절조정을 하여 분석하여도 분석 결과는 유사하였다.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목하였던
변수는 주로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이다.

2. 미시데이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분기별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의 1인 이상 일반가구(농가, 어가 제외)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7,200~8,000가구 내외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자료는 앞선 집계자료들과는 달리, 각 시점에서 소득분포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후술하는 횡단면 밀도를 추정하였다. 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이하 MDIS)를 통해 구하였으며, 기간은 서술하였던 거시 시계열 자료와 동일하게 2000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서,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고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신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이유는 우선 해당 분석은 가용한 시계열 기간이 길수록 좋다는 점에서 가계동향조사가 횡단면 가구 표본 수가 적더라도 과거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더 부합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본고는 경기변동 주기(business-cycle frequency)에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 자료인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 자료라는 점에서 설령 시계열 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경기변동 분석에서는 가계동향조사가 갖는 이점이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 주로 활용한 변수는 경상소득이다.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정기적으로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비경상소득-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목하였던 변수는 주로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은 특히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본고에서는 경상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¹⁰⁾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가구 주 연령이 20~65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구원 수가 보고되고 양수로 보고된 경우를 분석

10) Ma(2023)는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지언(Heterogeneous Agent New Keynesian, HANK) 모형을 캘리브레이션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질임금을 낮추고 이로 인해 노동수요가 증대하여 실업상태였던 경제주체를 취업상태로 전환시켜서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음을 보였다. Chang and Schorfheide(2024)에서는 이를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VAR)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였다. Ettmeier(2024)는 미국에서의 세금 인하 충격이 총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사업자(entrepreneur) 간 소득 격차가 커져서 불평등이 확대되며, 가족 그룹 내 불평등(with-in inequalities for families)은 축소함을 보였다.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계지출(=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합), 소비지출¹¹⁾이 0 이상으로 보고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개별 소득 분포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구원 수로 정규화하는 균등화소득은 고려하지 않았다.¹²⁾ 그리고 이상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보고된 자료 중 소득 상위 1% 가구는 제외하였다.

3. 횡단면 소득분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의 각 시점별 소득자료를 밀도함수(density)로 표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Chang and Schorfheide(2024)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포를 구하기 전에 보통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가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분포 - 정규분포 등 - 를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Chang and Schorfheide(2024)에서는 자연로그를 그대로 취하면 소득이 0인 경우 표본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역쌍곡사인 변환(inverse hyperbolic sine transformation)을 취하였다.¹³⁾ 또한 평균이 GDP와 같은 총소득/집계소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정규화(scaling)를 해주었다. 본고에서는 경상소득의 경우, 경상소득의 증위값과 1인당 명목GDP 간 비율을 구한 뒤, 해당 비율을 1인당 명목GDP에 곱한 값으로 나누어 주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1인당 명목GDP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피용자보수비율을 2000~2016년 평균값을 곱한 뒤 비율을 구하여 정규화하였다.

이렇게 정규화한 소득에 대한 커널밀도함수를 각 연도별로 구하였다.¹⁴⁾ 이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각 연도별로 소득분포에서의 하한값(lower bound)과 상한값(upper bound)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커널밀도함수를 구할 때 전체 연도에서 관측되는 모든 소득분포 구간에 대하여 동일한 하한값과 상한값¹⁵⁾을 전제로 하여 커널밀도함수를 계산하였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1인당 명목GDP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피용자보수비율을
2000~2016년
평균값을 곱한 뒤
비율을 구하여
정규화하였다.

11)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지출한 현금지출과 카드 및 유가증권(예: 상품권) 등 일체의 지출을 의미한다.

12) 재정정책이 소비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로 균등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13) 다른 문헌에서는 변수에 1을 더한 뒤 자연로그를 취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었다.

14) 커널밀도함수는 MATLAB ksdensity 함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15) 이 경우, 하한값은 소득이 0인 경우에 해당하며 상한값은 전체 기간에서 가장 높은 경상소득 관측치가 된다. 만약 각 연도에서 상한값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이 구간에 대한 밀도는 0이 된다.

fVAR 모형은
VAR 모형에서
횡단면분포 변수를
추가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수식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4. 실증분석 방법론: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VAR) 모형

본고에서 활용한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unctional Vector Auto-Regression, fVAR) 모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VAR 모형은 VAR 모형에서 횡단면 분포(cross-sectional distribution) 변수를 추가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수식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통상적인 거시 시계열 자료만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t 시점에서 관측되는 관심 거시 시계열 변수 벡터를 X_t 라고 하자. 이 경우에 정부지출, GDP, 국제수입은 $X_t = (G_t, GDP_t, TR_t)'$ 로 볼 수 있다. VAR 모형이 p 기간 시차와 연관성이 있는 VAR(p) 모형인 경우, 축약형(Reduced-form)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X_t = f(t) + \sum_{k=1}^p A_k X_{t-k} + u_t,$$

$$f(t) = \sum_{s=0}^S a_s t^s; \text{ 시차추세 함수}$$

$$u_t \sim N(0, \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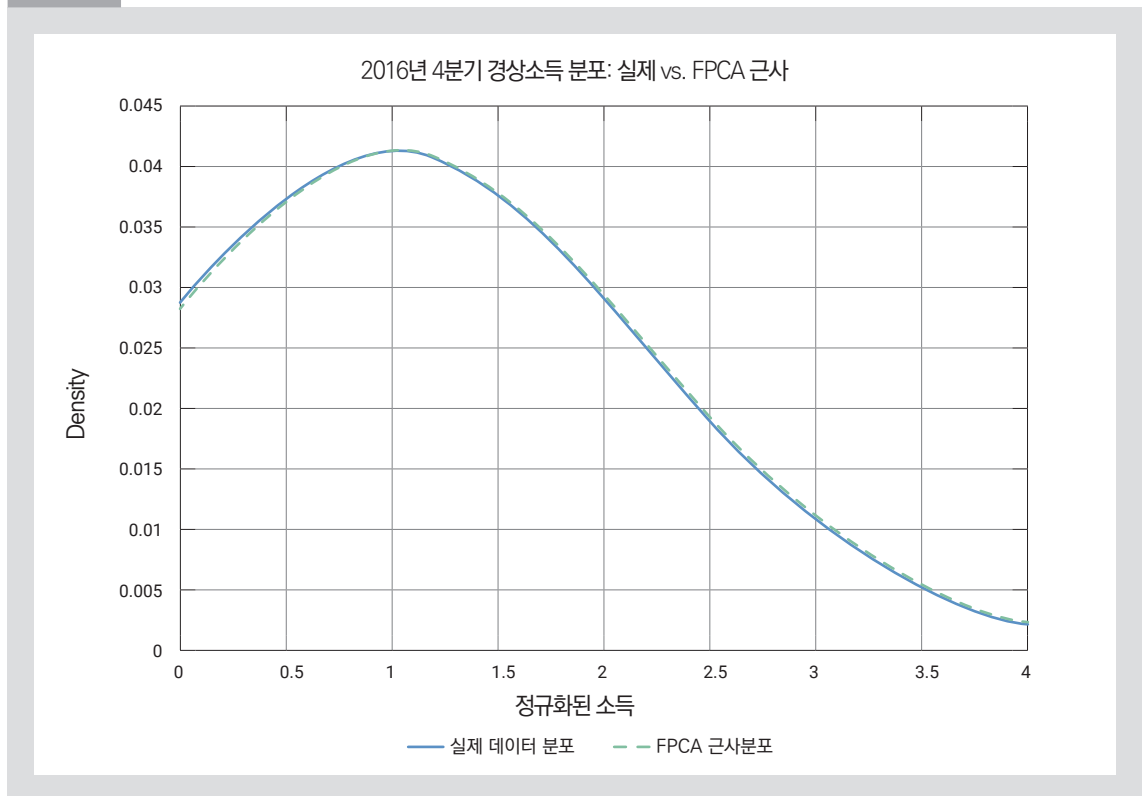
fVAR 모형은 위 수식에 본 장 제3절에서 구한 t 기마다의 횡단면 밀도함수를 계산 가능하게 넣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확률밀도함수는 차원이 무한하기 때문에 밀도함수를 직접 변수에 포함시켜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차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hang et al.(2022), Chang et al.(2023) 등에서 활용된 함수적 주성분 분석(Function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하 FPCA)을 이용하였다. 기반이 된 직관은 다음과 같다. 방법론의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차원이 높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유한한 주요 성분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즉, 매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t 기의 소득분포 함수가 g_t 라고 하면 이 g_t 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성분 $\{g_{i,t}\}_{i=1}^N$ 을 FPCA를 통해 추출하는 것이다.¹⁶⁾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성분 요소의 개수인 N 의 설정이다. 요소를 너무 적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출한 주성분이 원래 분포를 충분히 잘 근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요소를 과도하게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불안정해지기

16)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추정에서는 이 분포의 시계열상에서의 변이를 설명하는 성분이 이용된다. 이를 포함하여 더 이상 자세한 수학적 설명은 본고의 취지를 넘어설 수 있기에 생략한다. 관심있는 독자는 Chang et al.(2022) pp.16-20의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때문에 너무 많은 성분을 활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특히, 표본 크기 및 시계열 길이에 따라서 자유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시계열 길이가 크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최적 N 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FPCA에서 성분들이 변이를 설명하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고윳값(eigenvalue)을 높은 순서부터 누적하여 하여 변이의 일정 이상, 예를 들어 95% 이상을 설명하면 해당 성분까지 활용하였다. 경상소득의 경우, $N=2$, 즉, 성분 두 개를 활용하면 분포의 변이를 약 99.62% 설명하기 때문에 두 개의 성분을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은 2016년 4분기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경상소득 원자료를 활용한 커널밀도함수(파란색 굵은 실선)와 주성분 2개를 이용해 소득분포를 근사한 밀도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확인할 수 있듯이 주성분 2개로 원자료를 잘 근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실제 가계동향조사 경상소득 분포 vs. FPCA 근사: 2016년 4분기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 ~ 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본고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축차적 식별 방법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활용한 fVAR은 서술한 VAR 식에서 X_t 에 $\{g_{i,t}\}_{i=1}^N$ 을 포함시켜서 추정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FPCA를 제외한 부분은 기존 VAR과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추세 차수(시간 추세함수 $f(t)$ 에서의 S)와 시차 p 모두 슈바르츠 - 베이지언 기준(Schwarz Bayesian Criterion, SBC)에 근거하여 선택하였으며, 기준모형에서는 2차 추세와 2분기 시차를 의미하는 $p = 2$ 를 선택하였다.¹⁷⁾

5. 구조충격 식별

fVAR에서도 경기변동과 무관한 정부지출의 구조충격을 식별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며, 표준적인 VAR 모형에 비해서 식별을 더 용이하게 하지는 못한다. 식별에 관해서는 사실 fVAR에서 활용되는 근사시킨 $\{g_{i,t}\}_{i=1}^N$ 의 구조충격을 식별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바가 없다. 현재까지 문헌에서는 ① 분포에 해당하는 $\{g_{i,t}\}_{i=1}^N$ 이 VAR 모형 시스템에서 가장 내생적이며 ② $\{g_{i,t}\}_{i=1}^N$ 내에서는 $g_{k-1,t}$ 가 $g_{k,t}$ 보다 고ؤ값이 클 때 $g_{k-1,t}$ 가 더 외생적이라고 가정한다.¹⁸⁾ 이와 같이 가정하는 경우, 사실상 집계변수와 분포 간 관계를 식별할 때 분포를 가장 내생적이라고 전제하고 독립적으로 집계변수의 구조충격을 식별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문헌에서 다루지는 방법을 차용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축차적 식별 방법에 근거하여 재정정책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정부지출의 구조충격을 식별하기 위해서 한국 문헌에서는 축차적 식별 방법을 포함하여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주로 고려되었다. 첫 번째 방법이 홀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한 축차적 식별(Recursive identification) 방법으로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변수들 간 외생성 순서를 가정하여 구조충격을 식별하는 것이다. 즉, 만약 $X_t = (G_t, GDP_t, TR_t, g_{1,t}, \dots, g_{N,t})'$ 라고 하면 정부지출 G 가 가장 외생적, 소득분포 $\{g_{i,t}\}_{i=1}^N$ 가 가장 내생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Blanchard and Perotti(2002, 이하 BP)의 식별 방법을 차용하는 것이다.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당국 반응은 1분기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가정하에서 조세의 GDP 탄력성 추정치를

17) 대안에 해당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에서는 최적 시차가 8 이상임을 시사한다. 문헌에서 보편적으로 SBC보다 AIC가 더 긴 시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분포요소가 고려된 fVAR에서 큰 p 를 고려하는 경우 추정결과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SBC에 기반하여 시차 및 시간 추세를 선택하였다.

18) 현재까지 문헌에서는, 요소의 고ؤ값이 크다는 것은 해당 분포의 변이를 많이 설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ؤ값이 큰 요소가 분포의 변이를 더 적게 설명하는 요소에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외생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VAR 모형에서 FPCA를 통해 추출한 분포적 요소를 포함한 구조충격 식별은 중요한 문제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활용하여 재정지출의 구조충격을 식별하는 것이다. 김소영·김용건(2020)에 따르면 VAR 모형에서 구조충격을 식별한 구조 VAR(Structural VAR)에서 축차적 식별방법과 BP 식별방법하에서의 재정승수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¹⁹⁾ 세 번째는 추가경정과 같은 정보를 활용하거나 도구변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Lee and Park(2021, 2023)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장에서는 $X_t = (G_t, GDP_t, TR_t, g_{1,t}, g_{2,t})$ 로 하여 정부지출이 가장 외생적이고, 그다음으로 GDP, 국세수입, 요소 1과 요소 2의 순서로 외생적이라고 가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충격반응함수는
0기에 충격이
왔을 때
균제상태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의미한다

III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VAR) 모형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VAR)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제1절에서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IRF)를 보고하였다. 제2절에서는 양(+)의 정부지출 충격이 소득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study)으로, 김소영·김용건(2020)에서와 유사하게 정부지출이 증가하였을 때, 증가한 당시에는 국세수입이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 집계변수와 소득분포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1. 충격반응함수

[그림 2]은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의 합으로 정부지출로 측정한 경우, 정부지출이 1의 충격(unit shock)에 대한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다. 충격반응함수는 0기에 충격이 왔을 때 균제상태(steady-state)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의미한다. 1행은 정부지출이 증가한 충격에 대한 집계변수들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G \rightarrow G$ 는 정부지출 1 크기(1-unit)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의 반응, $G \rightarrow Y$ 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G \rightarrow T$ 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을 나타낸다.

해석하기 전에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은 현재 거시경제변수에 모두 자연로그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이 충격반응함수에서의 집계변수 반응은 탄력성으로 해석해야 한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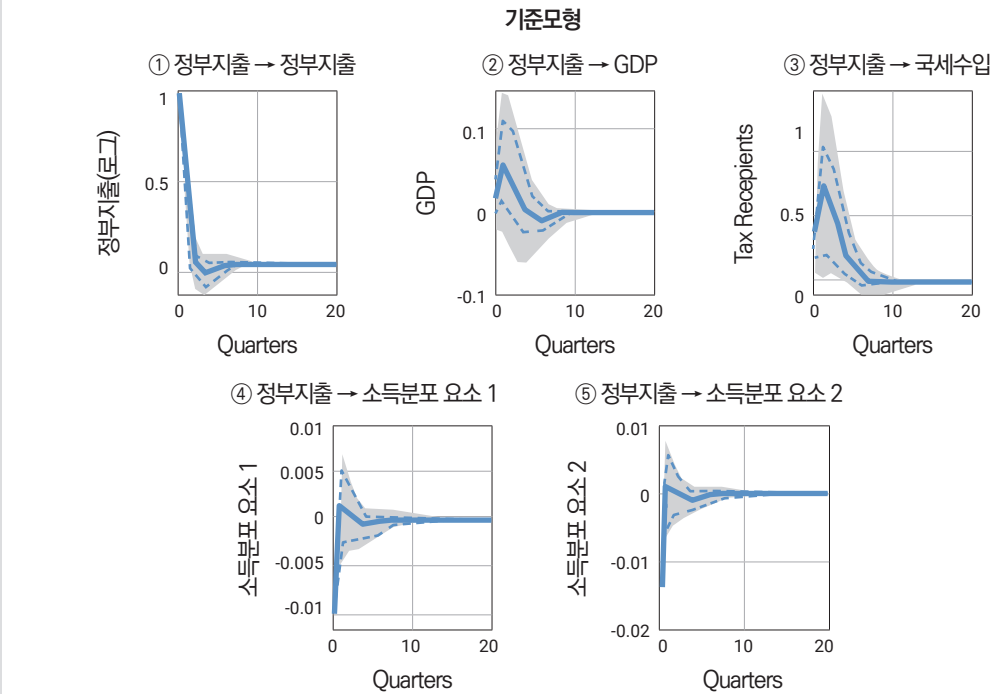
19) BP 식별에서 중요한 조제의 GDP 탄력성 추정치는 박기백·박형수(2002) -1.09, 김배근(2011) 2.067(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등이 있다. 이강구·허준영(2017)은 해당 모수를 베이저안 VAR에서 1-3 사이 균등분포를 갖고 있다는 사전적 가정(Prior) 하에서 직접 추정하기도 하였다.

20)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이 1원 증가하였을 때 GDP가 x원 변화하는 경우, 재정승수를 x라고 표현한다. 변수에 자연로그가 취해져 있는 경우, 문헌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당기승수, 누적승수 등을 계산할 수 있다(김소영·김용건(2020) p. 70 등 참조). 단, 엄밀한 재정승수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소득분포 변화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승수를 계산하지 않았다.

만약 정부지출 1원 증가에 따라 GDP가 몇 원 증가하는지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신뢰구간 68%에서는 양(+)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수입은 90%와 68% 신뢰구간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서의 국세수입 증가는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 증가한 세수 증가 혹은 제도의 변화 모두 가능하며, 본고에서 소개하는 모형에서는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 소득분포를 설명하는 요소 1과 요소 2는 0기에 유의하게 감소한 뒤에 균제상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인다.²¹⁾

그림 2 충격반응함수. 정부지출 = 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인 경우



주 ①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 반응, ②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③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 ④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분포 요소 1 반응, ⑤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분포 요소 2 반응을 나타냄.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해당 신뢰구간은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위를 차용하였음. 신뢰구간은 wild bootstr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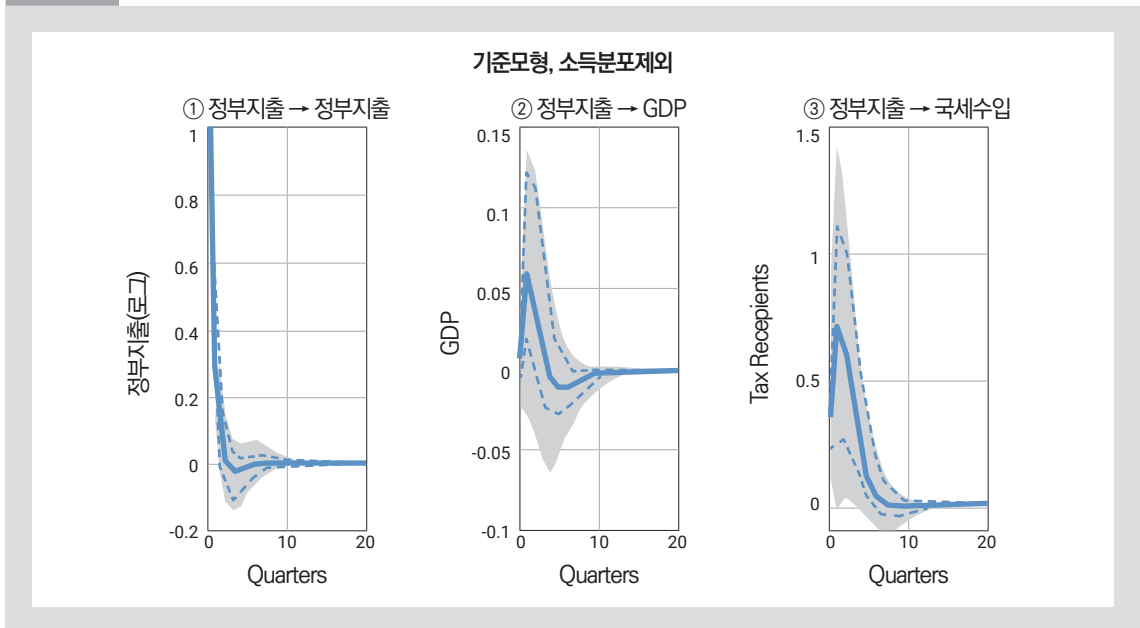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 재정지출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소 1과 요소 2의 충격반응을 이용하여 전체 분포 반응으로 복구하여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분포와 거시경제 변수 간 상호작용 여부가 정부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거시시계열 정보만을 고려한 통상적인 VAR에서의 집계변수 반응과 분포 정보를 같이 고려한 fVAR에서의 집계변수 반응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g_{1,t}$, $g_{2,t}$ 를 VAR 변수 X 에서 제외하여 $X_t = (G_t, GDP_t, TR_t)$ 로 동일한 축차적 식별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정부지출 충격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식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의 외생성 순서는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소 1과 요소 2가 제외된 분석에서 정부지출에 대한 GDP나 국세수입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Chang et al.(2024)에서 미국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fVAR 추정 결과에서 횡단면 분포 동학이 총량(aggregate variables) 파급효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음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효과를 탄력성 단위로 비교하는 경우, 분포와 거시경제 변수 동학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당기(0기), 1년 누적(4분기), 5년 누적(20분기) 모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혹은 넷째자리에서 나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3 충격반응함수.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 거시 시계열 변수만 고려



주 ①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 반응, ②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③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을 나타냄.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해당 신뢰구간은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위를 차용하였음. 신뢰구간은 wild bootstr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현재 모형에서는 소득분포 요소가 가장 내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동학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소득분포의 외생성 순서이다. 즉, 현재 모형에서는 소득분포 요소가 가장 내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동학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비판이지만 구조충격 식별이 중요한 VAR 모형에서 인과성 순서를, 특히 이와 같이 집계총량과 분포 간 관계에서 임의로 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먼저 내릴 수밖에 없다. 첨언하자면 fVAR 관련 문헌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분포가 가장 내생적이라고 가정한다. 저자가 이해하기로는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발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²²⁾ 한 가지 불완전한 방법 중 하나는 거시경제 변수와 소득분포 요소 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해보는 것이다. 수행 결과,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기에 소득분포 요소가 다른 거시경제 변수를 인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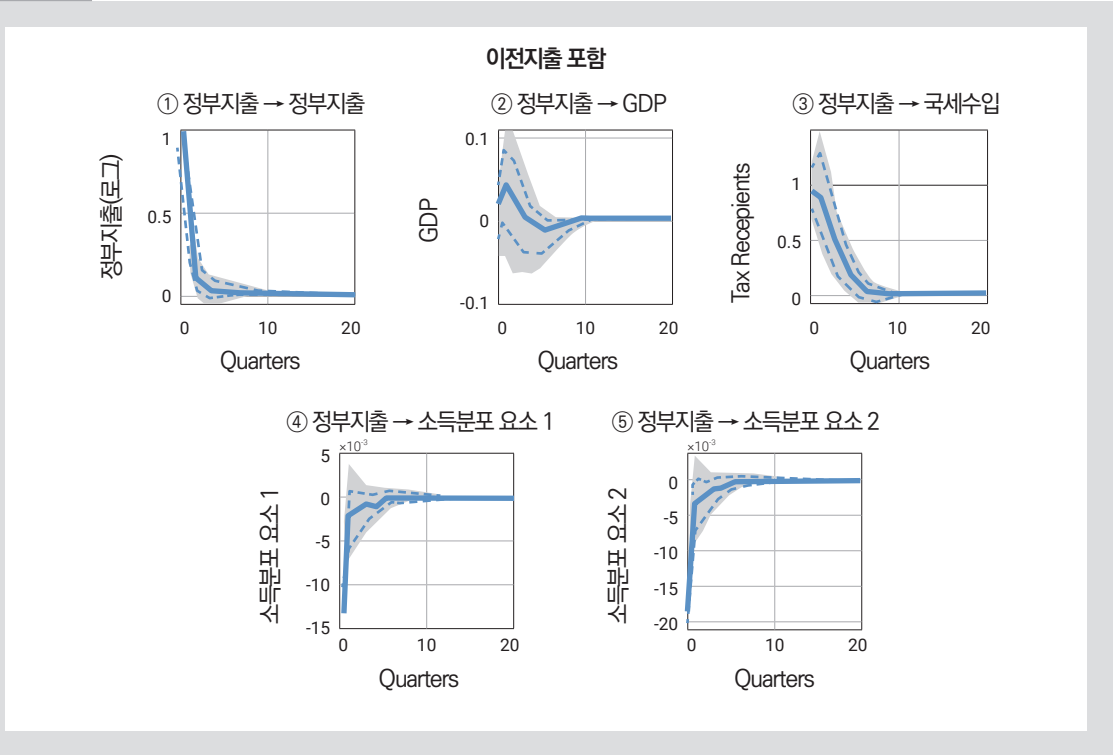
2. 강건성 검정

다음으로는 정부지출에 이전지출을 포함시킨 경우- 정부소비지출, 투자지출 그리고 이전지출의 합으로 정부지출을 정의 -에서의 상기 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지출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출이 GDP 혹은 국세수입에 미치는 효과가 소득분포를 고려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간 결과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정부지출에 이전지출을 포함시킨 경우 역시 탄력성 단위로 두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당기, 1년 누적, 5년 누적 모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혹은 넷째자리에서 나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2)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재까지의 구조모형에 기반하여, 거시경제적 충격이 소득분포를 인과한다고 가정하였다.

23) 추가적으로 소득분포가 가장 외생적이고 거시경제 변수가 내생적이라는 가정하, 즉 $X_t = [f_{1,t}, f_{2,t}, G_t, GDP_t, TR_t]'$ 로 추정하는 경우, 수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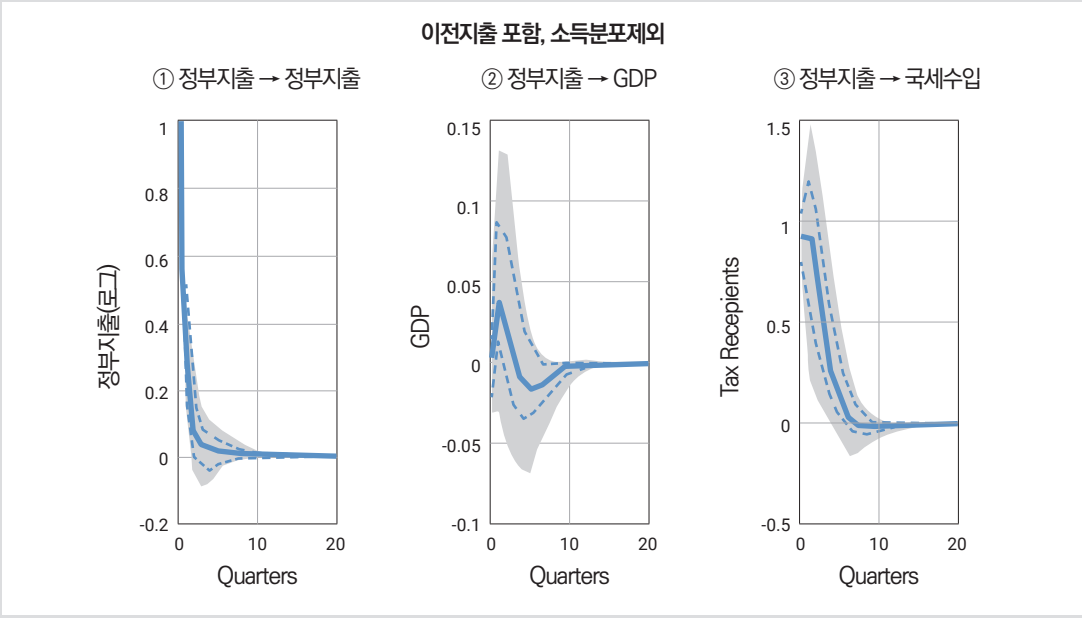
그림 4 충격반응함수. 이전지출을 포함한 경우



주 ①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 반응, ②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③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 ④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분포 요소 1 반응, ⑤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분포 요소 2 반응을 나타냄.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해당 신뢰구간은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위를 차용하였음. 신뢰구간은 wild bootstr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충격반응함수. 이전지출을 포함한 경우, 거시시계열 변수만을 고려



주 ①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 반응, ②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③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을 나타냄.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해당 신뢰구간은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위를 차용하였음. 신뢰구간은 wild bootstr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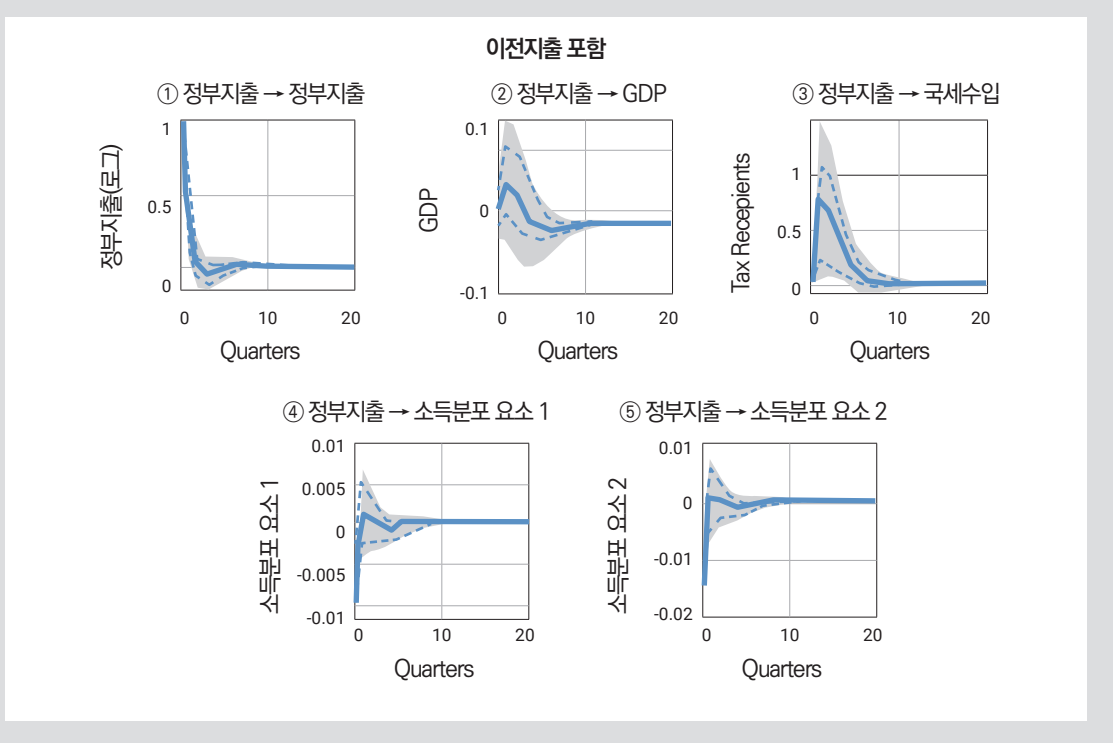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반사실적 분석: 정부지출 충당 방법

마지막으로 김소영·김용건(2020) 등에서 고려되었고 구조모형 분석에서도 자주 고려되는 반사실적 상황하에서 소득분포와 거시경제 동학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고려한 상황은 정부지출이 0기에 증가하였을 때 해당 기에는 국세가 아닌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이다.²⁴⁾ [그림 6]과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사실적인 상황하에서도 횡단면 소득분포 정보가 존재할 때와 부재하는 경우에서 정부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탄력성 단위로 두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당기, 1년 누적, 5년 누적 모두에서 절대적으로도 차이가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4) 이론적으로는 유동성 제약 등이 부재한 이상적인 경제에서는 리카디언 동등성 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의해 자원조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유동성 제약에 걸린 가계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비잔작 효과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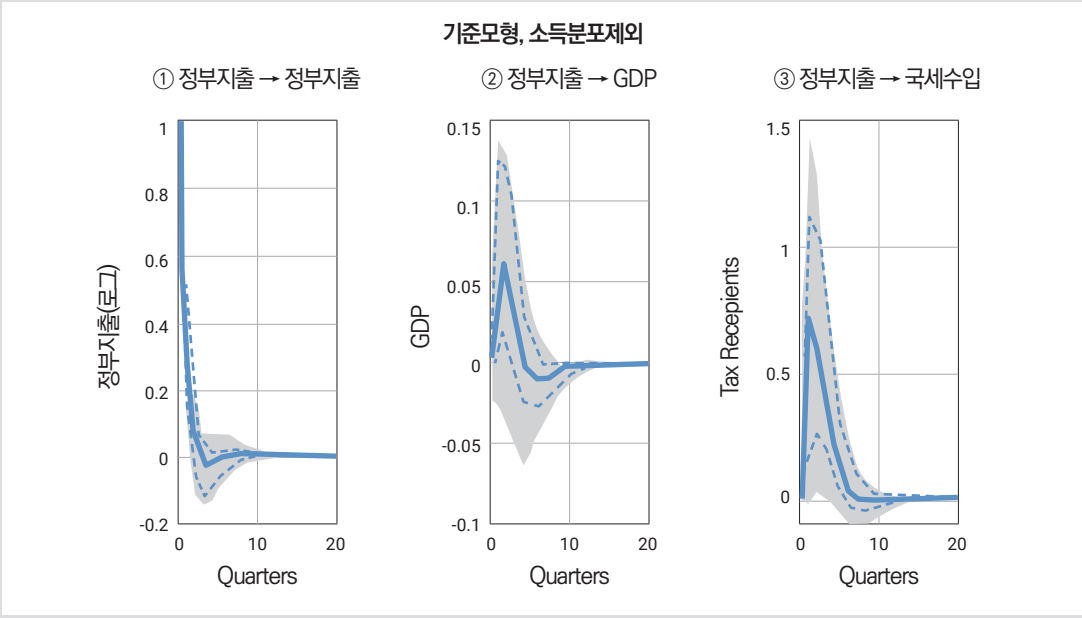
그림 6 반사실적 분석: 0기에 국채로 전부 조달한 경우



주 ①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 반응, ②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③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 ④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분포 요소 1 반응, ⑤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소득분포 요소 2 반응을 나타냄.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해당 신뢰구간은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위를 차용하였음. 신뢰구간은 wild bootstr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반사실적 분석: 0기에 국채로 전부 조달할 경우, 거시시계열 변수만을 고려



주 ①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정부지출 반응, ②는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GDP 반응, ③은 정부지출 충격에 대한 국세수입 반응을 나타냄. 음영은 68% 신뢰구간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해당 신뢰구간은 문헌에서 주로 활용하는 범위를 차용하였음. 신뢰구간은 wild bootstrap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논의

해당 실증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복해서 관련 문헌과 비교하자면, Chang et al.(2024)와 Bayer et al.(2024)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실증분석과 구조모형 분석 모두에서 횡단면 정보가 총량 동학에 미치는 역할이 양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Chang et al.(2024), Auclert and Rognlie(2020) 등에서 설명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으로 (평균 소득은 같은 상태에서) 소득불평등이 커지게 되는 경우, 보통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총수요 위축으로 인해 산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Auclert and Rognlie(2020)에서 실증적으로 이탈리아 자료를 활용하여 총소득 1%가 하위 90%에서 상위 10%로 이동하는 경우 총소득 대비 총소비 감소가 정량적으로 작음을 보였다. 또한 통화정책에 따라서 불평등 변화가 GDP에 미치는 효과가 없어질 수 있음을 역시 이론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실증분석에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장기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정량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²⁵⁾ 또한 해외문헌에서는 장기에 재정정책이 소득불평등 증가로 인한 총생산 감소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서술한 바와 같이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기존문헌에서는 단기적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이,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이 소득분포와 총생산 간 부(-)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관련하여 서술하였던 Bayer et al.(2024)의 연구에서는 이질적 경제주체 뉴케인지언(HANK) 모형을 추정하여 경기변동에서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추정하여 경기변동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였다.

해외문헌에서는 장기에 재정정책이 소득불평등 증가로 인한 총생산 감소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횡단면 소득분포 정보가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함수적 주성분 분석(FPCA)을 통해 소득분포 정보를 요약하고 이를 함수적 벡터자기회귀(fVAR)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문헌에서와 유사하게 한국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도 소득분포 정보와 거시시계열 변수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와 거시시계열 변수만을 고려하였을 때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고에서 활용한 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소득분포 변수를 가장 내생적인 요소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구조충격을 완전히 식별하는 데 이론적 제약이 존재한다. 즉, 외생성 순서를 가정한 축차적 식별방법 자체는 맞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요소가 가장 내생적이라는 가정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엄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고에서 소개한 fVAR 모형으로는 더 평등/불평등한 경제 환경에서 재정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Chang and Schorfheide(2024)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fVAR 접근법의 구조적 한계이다.

25) 자세한 논의는 Auclert and Rognlie(2020)를 참조.

현재 모형에서는
소득분포 요소가
가장 내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동학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향후 본문에서 서술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발전하여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재정정책의 단기적 효과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형평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와 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해외 문헌〉

- Auclert, A., and Rognlie, M., "Inequality and Aggregate Demand," NBER Working Papers, No. 24280, 2020.
- Bayer, C., Born, B., and Luetticke, R., "Shocks, Frictions, and Inequality in US Business Cycl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4(5), 2024, pp. 1211~1247.
- Blanchard, O., and Perotti, R.,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4), 2002, pp. 1329~1368.
- Chang, M., Chen, X., and Schorfheide, F., "Heterogeneity and Aggregate Fluctu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2(12), 2024, pp. 4021~4067.
- Chang, M., and Schorfheide, F., "On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Shocks on Income and Consumption Heterogeneity." NBER Working Paper, No. 32166, 2024.
- Chang, Y., Durlauf, S. N., Lee, S., and Park, J. Y., "A Trajectories-Based Approach to Measuring Intergenerational Mobility," NBER Working Papers, No. 31020, 2023.
- Chang, Y., Gómez-Rodríguez, F., and Hong, G. H., "The Effects of Economic Shocks on Heterogeneous Inflation Expectations," IMF Working Papers, 2022.
- Ettmeier, S., "No Taxation without Reallocati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ax Changes," Working Paper, 2024.
- Lee, B., and Park, K., "External Information and Fiscal Multipliers," *The Korean Economic Review*, 39(2), 2023, pp. 347~379.
- Lee, E. K., and Park, K., "Identifying Government Spending Shocks and Multipliers in Korea," *Journal of Asian Economics*, 76, 2021.
- Lee, S., and Kang, S., "Functional Analysis of Government Spending," Working Paper, 2025.
- Ma, E., "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 How Does One Affect the Other?,"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64(2), 2023, pp. 691~725.

참고문헌

〈국내 문헌〉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

김배근. 「구조적 VAR 모형 및 세율자료를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Vol. 59, No. 3, 2011, pp. 5~52.

김소영·김용건.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재정정책 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6(3), 2020, pp. 61~119.

박기백·박형수.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이강구·허준영. 「한국의 재정승수 연구: 베이지안 VAR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분석』, 23(1), 2017, pp. 55~8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0년 1분기~2016년 4분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5. 5.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5. 7. 4.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자: 2025. 6. 21.

특집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문건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I 2025 세제개편의 배경 및 방향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AI·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적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지출 수요는 고령화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입기반은 그간의 감세 정책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 고착화된 조세지출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목표로, 크게 세 방향의 추진 전략을 담았다. 우선, 경제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자본시장과 벤처투자, 지역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II 2025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5개 신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하여 AI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외국 연구기관 등

에서 근무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석·박사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전략기술을 추가 확대하며,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방위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K-문화·콘텐츠 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투자 여력이 큰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콘텐츠 산업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과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우선, 세액공제 적용 이후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고용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했으나, 고용 유지 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한다. 그리고 증가했던 고용 인원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잔여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되도록 개편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유연화하여 기업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지원한다.

나. 자본시장 활성화 및 혁신자본 세제지원 강화

국민 자산형성과 혁신자본 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한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하여 최대 3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동시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여 저배당 기업에는 유보이익에 추가 과세한다. 다음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표시 자산 투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BIS는 63개국 중앙은행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로, 이번 개정을 통해 예금·RP·파생상품 등에 대한 원화자산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외에 유가증권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기간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벤처투자조합이 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하여 혁신자본 운용방법을 확대한다.

다. 지역성장 지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10~20만원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0%(지방소득세 포함 시 44%) 까지 상향한다. 기존에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 금번 개정을 거치면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총 20.4만원 수준의 혜택(14.4만원 세액공제 +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된다. 또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재편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해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한다.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가.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교육비·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자녀들의 학원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돌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의 자녀 소득요건도 폐지한다.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이 월 100만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마련하는 경우 혜택이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한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근무 등으로 별도의 거주지를 가진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적정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상향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제도 다수 포함하였다. 임목 별채·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기존 세액감면에서 감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예탁금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나.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하였다. 기업이 업무추진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그 지출액을 전통시장

지출액으로 포함하여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체납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세액감면이 확대 지원되는 생계형창업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연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힌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세액공제 등은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다.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납세자 권익보장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편안에는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방법을 일 0.022%에서 월 0.67%로 개편하고,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고지세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도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등 관세제도를 개선한다.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가.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상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다음으로, 국내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농특세 포함)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으로 환원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은 1.0%로 인상한다.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감액배당)의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 과세체계 합리화

비과세·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총 72개로, 이중 16개를 정비(종료·축소)하여 5년간 약 4.6조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13개 항목, 5년 0.5조원 규모)과 비교하면 매우 큰 수준이다. 한편, 정책지원이 필요한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3%p 상향한다. 그리고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펀드의 이익을 배당소득 외에도 연금·퇴직·이자·기타소득으로 실현하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를 도입한다. 내국추가세 도입은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의 과세권이 타국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관세를 포함한 가격을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게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그리고 텀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텀핑물품으로 조립·완성 시 텀핑 과세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여 우회텀핑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다.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며느리·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한 영리법인에 유증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를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으로 인해 발송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징수행정 효율화도 병행한다.

Ⅲ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8.2조원 수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증가는 주로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에 따른 것이며, 세수 감소는 국가전략기술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에 기인한다. 연도별로는 2026년 약 2조 6천억원, 2027년 약 5조 7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세제개편에 포함된 총 13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완료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기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 기능은 재정을 통해 수행되며, 세제는 재정의 원천이자 뿌리이다.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지 않은 세금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필요한 만큼 하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선 감세로 깎아준 세금부터 정상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비과세 감면도 최대한 정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잘 마무리되어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6월 4일에 출범한 새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조세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올해는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이전 정부와 뚜렷하게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②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③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각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첫째는 세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둘째는 과세 형평성 개선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며, 셋째는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세수 효과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연간 약 8조 1,672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 중 가장 큰 규모로 새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재정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서민·중산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개편안도 눈에 띈다.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개편안이 일부 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있음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워 이번에도 적절한 조치를 담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본고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과세, 금융 과세, 소득 과세, 그리고 세수확충을 위한 정책 등의 순서로 분야별 개편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II 기업 과세: 세수 확보와 성장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기업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우선 기업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편안으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올해로 종료된다. 반면,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R&D와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기술 범주에 인공지능 분야가 새로 추가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의 세부 기술도 신설·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주에는 새로운 방위산업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고, 기존에 있던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은 적용 기한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기술이나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산업 육성에 조세정책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그 밖에

표 1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신설 및 확대

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화시설	
		신설 여부	세부 기술	신설 여부	세부 기술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	신설(5개)	생성형 인공지능	신설(1개)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신설(2개) 확대(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신설(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신성장·원천기술	방위산업	신설(1개)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신설(1개)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보도자료2, 2025. 7. 31.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법인세율 인상은 사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제개편이다. 조세는 경제주체의 행태를 왜곡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래·김우철, 2007; 오종현, 2016). 따라서 경제성장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책 목표와 상충된다. 다만 명목세율 1%p 인상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2023년 법인세율 1%p 인하 등 과거 법인세율 변화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으나, 최근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투자와 성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크기가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법인세 외에도 시장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법인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증분석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마냥 낮추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법인세율이 2023년부터 1%p 인하되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다시 1%p 인상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인세율은 경쟁국과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자본을 이동시켜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국내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6.4%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4.2%보다 높은 수준이다.¹⁾ 그리고 이번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세율은 27.5%로 상승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세 부담이 온전히 법정 명목세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세제의 복잡한 특성상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법정 명목세율은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경쟁국들의 법인세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과세에서 문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와 지나친 중소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체계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2단계의 단순한 세율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법인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한 이유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소득의 도관의 역할을 하는 법인을 통해

1) OECD Data Explorer, Corporate tax, "Corporate income tax statutory and targeted small business rates,"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Taxation%23TAX%23%7CCorporate%20tax%23TAX_CPT%23&pg=0&fc=Topic&bp=true&snb=16&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AX_CIT%40DF_CIT&df\[ag\]=OECD.CTP.TPS&df\[vs\]=1.0&dq=A..ST..S13%2BS1311%2BS13M..&lom=LASTNPERIODS&lo=1&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Taxation%23TAX%23%7CCorporate%20tax%23TAX_CPT%23&pg=0&fc=Topic&bp=true&snb=16&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AX_CIT%40DF_CIT&df[ag]=OECD.CTP.TPS&df[vs]=1.0&dq=A..ST..S13%2BS1311%2BS13M..&lom=LASTNPERIODS&lo=1&to[TIME_PERIOD]=false), 검색일자: 2025. 8. 9.

소득재분배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높은 법인세율은 임금과 상품 가격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실제 세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착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잡한 세율체계와 지나친 중소기업 위주의 세제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낮은 세 부담을 위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하여 중소기업에 머물거나 기업 쪼개기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제의 개편 방향으로 법인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이라는 자격 자체보다는 창업 단계의 지원을 통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 잘 정착한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부담하며 기업활동을 한다면 세제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거되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세계개편안도 이러한 방향의 개편을 포함하지는 못했다. 매년 세법개정 또는 세계개편이 이루어지지만 기업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인세 세율체계는 여전히 4단계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요건은 그대로이며, 조세지출 정비에 대한 논의 사항 언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였던 적용 기한이 단순 연장되는 것으로 개편안에 반영되었다. 김빛마로 외(2022)가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지원 방식과 지원 대상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재무성과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수평적·수직적 형평성도 저해하는

제도로 계속하여 운영할 이유가 크지 않은 제도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법인세율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요건도 손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세계개편 또는 세법개정에서는 기업 과세의 효율화를 위한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미래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필자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기술이 우리 미래의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 2016년이었고, 이후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미국, 중국 등에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미래 산업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전략산업에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야 포함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정할 때 중요하고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선도적으로 우대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 현재와 같이 우대하는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세세하게 열거하여 지정하는 방식이 과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방식인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적용 기한이 연장

되면서 환류 대상 소득에 배당이 추가되었다. 이는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는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고 남은 기업의 소득에 처분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에 해당하며 이중과세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만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도 훼손된다. 기업의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정부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와 임금 등으로 환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최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김학수(2020), 김빛마로(2024) 등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투자, 임금, 배당 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 촉진세제와 같은 징벌적 과세보다는 세제혜택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과세 중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증가한 인원당 일정 금액을 2~3년간 세액

공제하는 제도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기업이 동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증가한 고용인원 중 일부가 감소하면 고용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남은 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증가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이 지난 후 사후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비합리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동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증가한 고용인원 중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한 채 유지된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은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 감소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징하는 대신 1년 차의 세제혜택을 낮추고 2~3년 차의 세제혜택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이는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만드는 유인체제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오종현(2021), 최인혁·문지웅(2023) 등이 지적한 것처럼

표 2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 금액 개편안

(단위: 만원)

적용대상	연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현행	개편안				
우대	1년 차	1,450	700	1,550	1,000	800	500	400	300
	2년 차		1,600		1,900		900		500
	3년 차		1,700		2,000		900		
기본	1년 차	850	400	950	700	450	300		
	2년 차		900		1,200		500		
	3년 차		1,000		1,300		500		

주 1. 중견·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소 고용증가인원은 각각 5명과 10명
 2. 우대 적용 대상은 청년(15~34세), 장애인, 고령자(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1(개조식), 2025. 7. 31., p. 8.

동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거나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금융 과세: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원칙

금융 과세에서 눈에 띄는 세제개편안은 증권거래세율 인상,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이다.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상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 중 하나인 해당 종목의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여기에 기업 과세와 관련된 것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 대상 소득에 배당을 추가한 개편안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이 중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는 올해부터 시행하려다 그러지 못하고 작년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도 관련이 있다. 그간 금융투자 시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하해 왔다. 이에 코스피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0년 0.1%에서 2025년 0%로 0.1%p 낮아졌고, 같은 기간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도 0.25%에서 0.15%로 0.1%p 낮아졌다.²⁾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주식 양도차익을 비롯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했는데, 올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무산되었고 증권거래세율만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낮췄던 증권거래세율 중 일부를 환원하여 금융 부문을 통한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요건이다. 사실 ‘대주주’라는 용어 때문에 동 제도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할 때의 과세기준을 정하는 제도이다.³⁾ 현재는 특정 종목을 특정 시점에 5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기간 동안 해당 종목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은 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할 경우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소득이 아닌 특정 종목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잘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시점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 전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시점 이후에 다시 매수함으로써 조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물량으로

2) 코스피 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는 0%이지만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3)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라는 용어를 고액주주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었다.

연말연시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특정 종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 부담이 결정되어 손익통산에도 제약이 크다. 이처럼 현행 주식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던 것이었다. 현행 제도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서 단순히 종목당 보유금액 요건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자본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고, 이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꼽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투자·상생 협력 촉진세제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고배당 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모든 배당소득이 아닌 고배당 기업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먼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만 한다. 만약 이 요건이 충족되면 배당소득은 14%, 20%, 35%의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분리과세된다.

이러한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세금을 부담하는 배당소득자의 행태가 아닌 기업의 행태에 따라 소득자의 과세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의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대상과 해당 행위를 결정하는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들은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 투자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할 때 해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조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배당소득이 많아 현행 제도하에서 종합과세의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에게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이 주식 투자의 세후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주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거의 없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세 부담

표 3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

① 적용요건(① and ②)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1(개조식), 2025. 7. 31., p. 9.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당소득 과세방식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배당은 법인 단계에서 이익에 과세한 후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배당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이에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에는 배당가산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이 완벽하지는 않다. 배당가산율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은 15%p의 차이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에서는 종합과세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양도소득보다 배당소득에 더 높게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단순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소폭 낮춘다고 해서 배당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방식을 논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소득 과세: 민생 안정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 중산층 등의 소득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수의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그간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이었던 부분들을 개선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조세정책 당국이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소득으로 인해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 1인이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개편안에는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경우 동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과 상충되는 개편도 있다. 그중 하나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300만원인 기본한도를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하며, 총급여액이

표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 개편안

(단위: 만원)

총급여액 구분	현행(자녀 수 무관)	개편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	300	350	400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250	250	275	300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1(개조식), 2025. 7. 31., p. 13.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만원인 기본한도를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하므로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를 기본공제와 같은 인적공제 제도가 아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김재진·기은선(2018)의 평가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축소 및 폐지해야 할 제도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에서 지출을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와 사회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가치재에 대한 지출일 때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상당히 광범위한 불특정 지출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축과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150만원인 기본공제를 소폭 확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인적공제인 기본공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렸는데, 추측하건대 기본공제를 확대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서 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를 차등 적용하더라도 무자녀일 때의

기본한도를 낮추어 동 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세수 손실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 현재 150만원인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할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개편안도 마련되었다. 이는 많은 가정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방과후 예체능 학원을 이용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그러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자녀의 교육을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가치재로 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교육이 부족할 때 세제지원을 통해 교육 투자를 확대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방과후 예체능 학원비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양육비 성격에 가까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본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한편, 현재 미취학 자녀에 대한 학원비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다섯 살에 좋은 영어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 4세 고시 준비가 성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고재연, 2025. 3. 13.).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녀 교육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녀의 교육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할 때 타당한데, 사교육이 지나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를 통해 지원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장년층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분리과세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연금 중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율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액에 대한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급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오종현·권성준(2024)이 지적한 것처럼 현행 퇴직소득세가 워낙 낮기 때문에 높은 감면율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세제혜택과 함께 퇴직소득세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축을 지원하는 세제는 현재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포함되었는데, 개편안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를 배제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대상도 현재보다 합리화된다. 농협, 수협 등에서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이 현재는 비과세되지만, 개편안에서는 2026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로 분리과세된다. 이는 본래 제도의 목적이

농어촌 등 금융 소외지역 및 저소득자의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준조합원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제도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이후 준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9%의 세율이 적정한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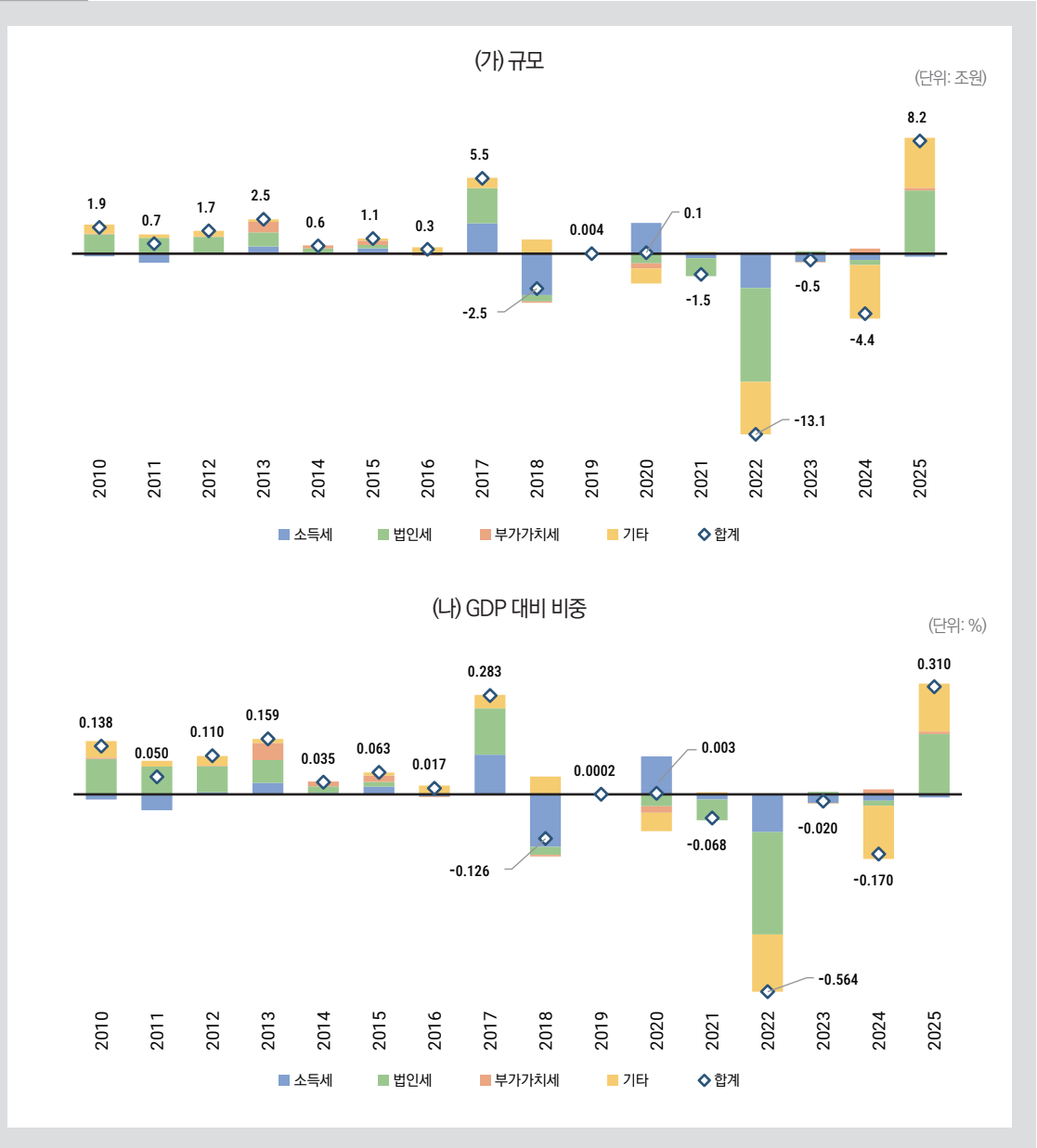
V 세입기반 확충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세수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는 2010년 이후의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안 중 가장 큰 규모인 연간 약 8조 1,672억원, GDP의 약 0.31%⁴⁾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논의한 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율 인상과 증권거래세율 인상이 이러한 세수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확대는 최근의 감세 기조로 약화된 세입기반과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그리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연간 13조 1천억원 가량, 그리고 2024년 세법개정안은 연간 4조 4천억원 가량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4) GDP 대비 비중은 세제개편안 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연도의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2025년 GDP는 2024년 GDP에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에 나타난 2025년 경성성장률 전망치(3.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세제개편안 및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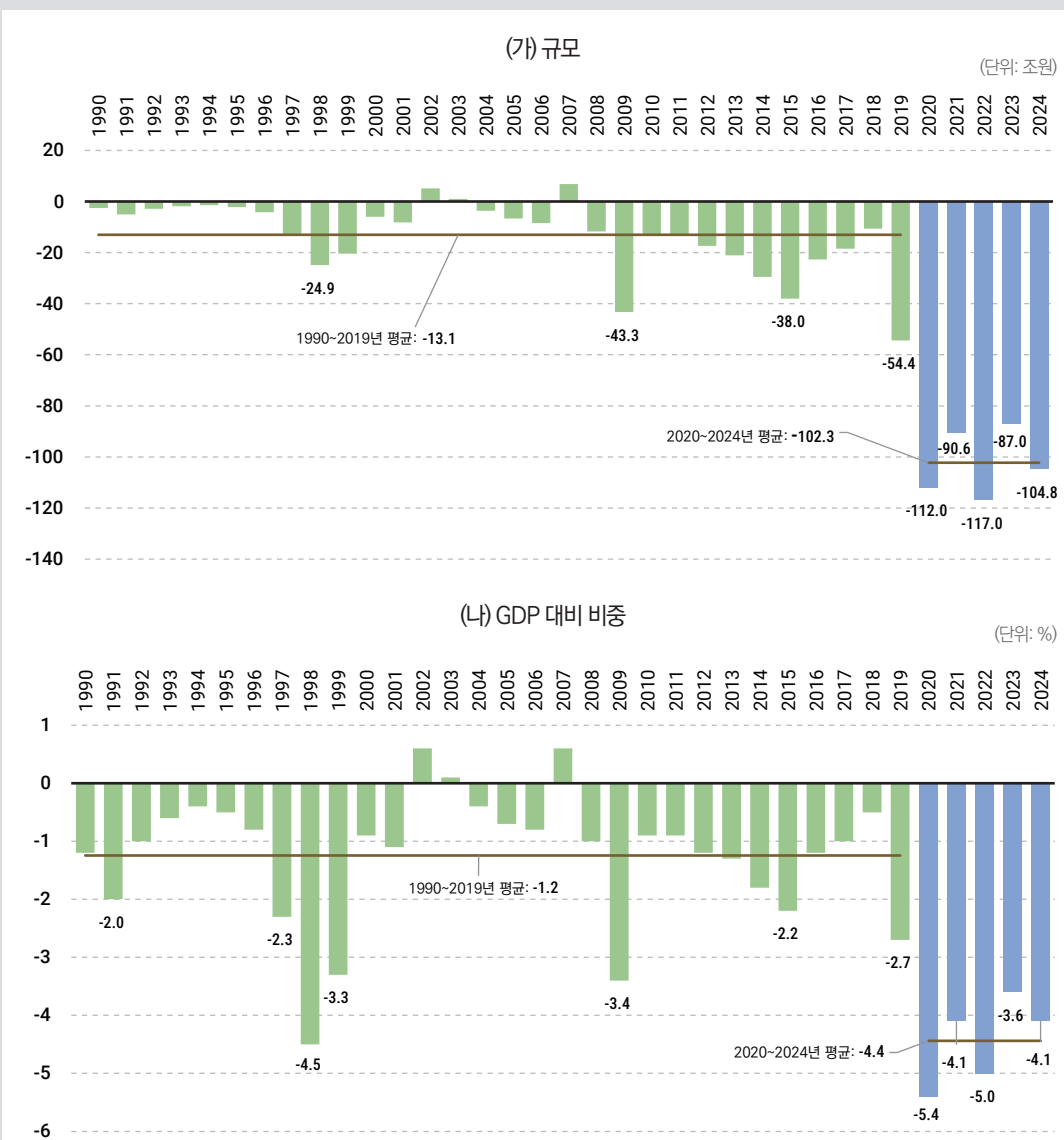
주 1. 2011년과 2022년은 부가가치세가 기타에 포함
 2. GDP 대비 비중은 세제개편안 또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연도의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2025년 GDP는 2024년 GDP에 정부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에 나타난 2025년 경성장성장률 전망치(3.2%)를 적용하여 추정

출처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또는 「세법개정안」, 각 연도
 2.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1. 2.

이처럼 감세 기조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좀처럼 코로나19의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1990~2019년까지 20년간 평균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GDP의 1.2%였으나, 2020~2025년까지 5년간의 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4.4%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난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한 GDP의 4.1%를 기록하여 재정수지

그림 2 연도별 관리재정수지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통계청, 지표누리, e-나라지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검색일자: 2025. 8. 8.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향후 재정지출 수요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지출, 미래산업 육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지출, 기후위기 대응 지출 등 구조적 재정지출 수요는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난 발생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여건하에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된다.

앞에서 논의하지 않은 개편안 중에서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해 0.5%의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 교육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로 0.5%p인상하여 2단계 누진 세율 체계로 개편한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특히, 이영한 외(2025)는 이창희(2002), 이만우 외(2006), 류민정(2011), 정재현(2013) 등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당초 도입 논리 중 하나였던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체 세목이 되기 어렵고, 목적세임에도 수입과 지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또한 개인에 대한 직접세가 아님에도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하여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추가로 발생한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에 투입되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면 교육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지적되었던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김학수(2021)가 지적했듯이 현재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교육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세수 확보를 위해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조세지출 정비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올해 총 72개 조세지출 항목의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데, 이 중 7개를 종료하고, 20개는 재설계, 그리고 44개는 단순 연장된다.⁵⁾ 적용 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로는 앞에서 언급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효과성이 미흡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1개는 미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확대되거나 단순 연장되는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서도 논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단순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과표 양성화를 위해 1999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이미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조세특례는 한 번 도입되면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조세특례를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통해 각 조세특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특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여러 조세특례와 본 세목에 대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개편 방향 속에 조세특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VI 나가며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조세제도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이루는 지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그리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가능한 과세 원칙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제도의 세제개편 내용은 단순히 현재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조세제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도 부합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가 바뀌면 세 부담 측면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손실을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통해 설득을 구할 필요도 있다. 연말 국회에서 확정되기 이전 각계각층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기본방향처럼 도약하는 경제, 안정된 민생, 튼튼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재연, 「“초등 입학전 끝내자”...4세 고시 영어학원에 月265만원」, 한국경제, 2025. 3. 1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328231>, 검색일자: 2025. 8. 18.
-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 8. 22.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1(개조식), 2025. 7. 31.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보도자료2, 2025. 7. 31.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또는 「세법개정안」, 각 연도
- 김빛마로,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제334호, 한국조세연구원, 2024. 4., pp. 8~32.
- 김빛마로·조희평·윤성만,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9.
- 김승래·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3,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재진·기은선,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 김학수,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20. 9.
-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2021. 12. 29.
- 류민정, 「목적세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교육재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6권 제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pp. 87~112.
- 오종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재정포럼』, 제295호, 한국조세연구원, 2021. 1., pp. 32~59.
- 오종현, 「GIMF 모형을 활용한 주요 세목의 효율성 분석」, 『재정포럼』, 제240호, 한국조세연구원, 2016. 6., pp. 22~45.
- 오종현·권성준, 「연금과세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4-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12.
- 이만우·전형준·박기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6, pp. 35~55.
- 이영한·문성훈·박훈·조형태,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개편에 관한 연구: 과세의 적정성과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42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5, pp. 157~184.

참고문헌

정재현,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pp. 179~204.

최인혁·문지웅,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3-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12.

〈통계자료 및 누리집〉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통계청, 지표누리, e-나라지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검색일자: 2025. 8. 8.

OECD Data Explorer, Corporate tax, “Corporate income tax statutory and targeted small business rates,” [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Taxation%23TAX%23%7CCorporate%20tax%23TAX_CPT%23&pg=0&fc=Topic&bp=true&snb=16&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AX_CIT%40DF_CIT&df\[ag\]=OECD.CTP.TPS&df\[vs\]=1.0&dq=.A..ST..S13%2BS1311%2BS13M..&lom=LASTNPERIODS&lo=1&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fs[0]=Topic%2C1%7CTaxation%23TAX%23%7CCorporate%20tax%23TAX_CPT%23&pg=0&fc=Topic&bp=true&snb=16&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AX_CIT%40DF_CIT&df[ag]=OECD.CTP.TPS&df[vs]=1.0&dq=.A..ST..S13%2BS1311%2BS13M..&lom=LASTNPERIODS&lo=1&to[TIME_PERIOD]=false), 검색일자: 2025. 8. 9.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디지털 자산 증개인 보고 관련 전환유예 조치 연장 및 확대

- ◆ 미국 국세청은 2025년 6월 12일, 디지털 자산¹⁾의 매각 및 교환 거래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는 증개인의 벌금 및 예비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²⁾ 납부 의무에 대한 전환유예(transition relief)³⁾ 조치를 2026~2027년까지 연장·확대함(Notice 2025-33)^{4,5)}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증개인으로 하여금 디지털 자산 거래 수익 신고서(Form 1099-DA)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음
 - 해당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증개인은 수취인 명세서(payee statements)를 발급하고 일부 거래에 대해 예비 원천징수를 해야 했음
 - 그러나 업계에서 해당 규정의 이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전환 유예 조치를 공지함(Notice 2025-56)
 - 해당 공지는 2025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벌금과 예비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면제하였고, 2026년까지 유예 조치함
-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26년 발생한 거래에 대해 증개인이 세금을 원천징수 및 예비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아도 벌금 면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2027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증개인이 수취인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국세청의 TIN 매칭 프로그램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예비 원천징수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
 - 2027년에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 거래(exchange)에서 원천징수된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전체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증개인이 해당 자산을 현금화하여 납부한다면 부족분에 대한 제재를 면제함
 - 미국인(US person)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고객과 관련된 2027년의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전환유예 조치가 적용됨

1)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로 보호된 블록체인 또는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디지털 가치의 표현물(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 표현함

2) 예비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란 납세자 식별번호(TIN)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under-reported) 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2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향후 지급액에서 공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이 확실히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3)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란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법 또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일정 기간 기존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의미함

4) IRS, “Extension and Modification of Transitional Relief Under Sections 3403, 3406, 6721, 6722, 6651, and 6656 with Respect to the Reporting of Information and Backup Withholding on Digital Assets by Brokers under Section 6045,” 2025. 6. 12., <https://www.irs.gov/downloads/irs-drop>, 검색일자: 2025. 6. 26.

5) IBFD, “IRS Extends and Expands Transition Relief for Digital Asset Broker Reporting,” 2025. 6.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13_us_1.html, 검색일자: 2025. 6. 26.



캐나다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 ◆ 캐나다는 2025년 6월 29일, 디지털서비스세(DST)를 폐지한다고 발표함⁶⁾⁷⁾
- 캐나다는 DST 도입 이전까지 디지털서비스세와 관련하여 다자간 협정을 선호해 왔는바, 캐나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 및 안보에 대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함
- 미국은 2025년 6월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 시행을 비판하며 무역 협상 중단과 관세 부과를 예고함
- 캐나다는 2025년 6월 29일,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힘
- 캐나다의 카니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21일까지 새로운 경제 및 안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디지털서비스세는 2025년 6월 30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한이었으나 법 폐지 시점까지 납세의무가 연기됨⁸⁾
- 캐나다 과세관청은 디지털서비스세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를 면제 또는 취소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예정임

6) Government of Canada, "Canada rescinds digital services tax to advance broader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2025. 6. 29.,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6/canada-rescinds-digital-services-tax-to-advance-broader-trade-negotiations-with-the-united-states.html>, 검색일자: 2025. 7. 11.

7) IBFD, "Canada Drops Digital Services Tax Following Trump Ultimatum, Clearing Path for Renewed US Trade Deal," 2025. 6.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30_ca_1.html, 검색일자: 2025. 7. 11.

8) Government of Canada, "Digital services tax," 2025. 7. 17., <https://www.canada.ca/en/services/taxes/excise-taxes-duties-and-levies/digital-services-tax.html>, 검색일자: 2025. 7. 21.



영국

2026년부터 암호화자산 보고의무 시행 예정

- ◆ 영국 재무부(UK Treasury)는 2025년 6월 24일,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인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 보고(실사 및 보고 요건) 규정 2025(SI 2025/744)'를 제정함⁹⁾¹⁰⁾
- 본 규정은 영국 내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reporting crypto asset services providers, RCASPs)가 매년 대상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임
- RCASPs는 영국 국세청(HMRC)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의 대상 암호화자산 거래, 활동 및 세무상 거주지에 관한 연간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해당 정보는 영국 국세청에 보고되어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와 대조되며,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파운드¹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¹²⁾
- 보고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RCASPs는 비영국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다른 CARF 관할구역과 교환될 것임을 통지해야 함
- 마찬가지로, 해외 CARF 관할구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영국 내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금번 규정을 통해 납세자가 암호화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른 보고를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의 효과를 높일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힘¹³⁾
- 또한 영국 정부는 금번 규정을 통해 2030년 4월까지 최대 3억 1,500만파운드¹⁴⁾의 세수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힘¹⁵⁾
- 금번 규정은 2024년 봄 시행된 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마련됨¹⁶⁾

9) IBFD, "UK's Crypto Asset Reporting Obligations Set to Apply from 2026," 2025. 7.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2_uk_1.html, 검색일자: 2025. 7. 3.

10) GOV.UK., "2025 No. 744 - TAXES - The 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Due Diligence and Reporting Requirements) Regulations 2025," 2025. 6. 24., https://www.legislation.gov.uk/ukxi/2025/744/pdfs/ukxi_20250744_en.pdf, 검색일자: 2025. 7. 3.

11)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5만 9,239원임

12) IBFD, "Crypto Owners to Share Personal Data with HMRC from 2026," 2025. 7.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8_uk_2.html, 검색일자: 2025. 7. 11.

13) GOV.UK., "Implementation of the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 2025. 6. 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yptoasset-reporting-framework/implementation-of-the-cryptoasset-reporting-framework-carf>, 검색일자: 2025. 7. 3.

14)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872억원임

15) IBFD, "United Kingdom - Crypto Owners to Share Personal Data with HMRC from 2026," 2025. 7.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8_uk_2.html, 검색일자: 2025. 7. 11.

16) GOV.UK.,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ommon Reporting Standard amendments, and seeking views on extension to domestic reporting," 2024. 10. 30.,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common-reporting-standard/cryptoasset-reporting-framework-and-amendments-to-the-common-reporting-standard-extension-to-domestic-reporting-and-implementation>, 검색일자: 2025. 7. 3.



프랑스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 입법안 부결

- ◆ 프랑스 상원은 2025년 6월 12일, 초고액 자산가(Ultra-High-Net-Worth Individuals)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Zucman tax)¹⁷⁾ 입법안을 다수결(전체 348명 중 188명)로 부결함¹⁸⁾
-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는 순자산이 1억유로¹⁹⁾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2026년부터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임²⁰⁾
-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한 모든 자산²¹⁾을 대상으로 하며, 순자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부동산세, 사회보장기여금, 고소득자 특별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이 납세자에게 최종 과세됨
- 하원은 2025년 2월 20일, 입법안을 채택하였으나 상원은 2025년 6월 12일, 부결함
- 상원은 동 세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자산가의 국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함
- 입법안은 국회에서 재심의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부는 입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체안을 준비 중임

17) 동 세제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이 제안한 것으로 자산가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18) IBFD, "Senate Rejects Minimum 2% Wealth Tax on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2025. 6.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13_fr_1.html, 검색일자: 2025. 7. 11.

19)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04억 9,100만원임

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5-03호』, p. 7

21) 동산·부동산, 사업용 자산, 생명보험 계약, 신탁을 통해 보유한 자산을 포함함



독일

암호 자산 및 고액 자산가 관련 정보 보고를 포함한 DAC8 지침 이행을 위한 법률 초안 발표 및 공개 의견 수렴

- ◆ 독일 재무부는 행정 협력에 관한 2011년 지침을 개정하는 지침(2023/2226, 일명 DAC8)의 국내법 이행을 위한 입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함²²⁾
- DAC8(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자화폐(e-money) 및 암호 자산(crypto assets)에 대한 세무 목적의 정보 보고 및 교환 의무 도입
 - 고액 자산가에 대한 국제적 사전해석(cross-border rulings) 정보의 교환
- DAC 체계 아래 부과되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이행 조치
- 주요 규정과 관련한 이행 일정은 EU 회원국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이와 관련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7월 14일까지임
- 단, 납세자 식별번호(TIN) 관련 일부 조항은 2027년 말 또는 2029년 말까지 이행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각각 2028년 또는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이탈리아

2년간 예방적 합의제도(Concordato Preventivo Biennale, CPB) 관련 지침 발표

-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입법령 제13호/2024를 통해 도입된 2년간 예방적 합의제도(Concordato Preventivo Biennale, 이하 CPB)에 관한 해설안을 회람함²³⁾
- 예방적 합의제도(CPB)는 이탈리아에서 사업소득 또는 전문 소득을 얻는 거주 개인이, 과세당국이 제안한 2개 과세 연도의 신고소득 및 순생산 가치(예측 모형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에 합의하여 체결하는 제도임
- 위와 같이 합의를 수락한 납세자는 해당 기간 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나 세무 확정(세액 결정)을 받지 않게 됨
- 이번에 과세당국이 발표한 해설안(2025년 6월 24일 자, 회람번호 9/E)에서는 예방적 합의제도(CPB)의 적용 요건, 제외 대상, 관련 선납금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해석을 제공함

22)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Implementing DAC8 Rules," 2025. 7.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1_de_1.html, 검색일자: 2025. 7. 1.

23) IBFD, "Tax Authorities Clarify Preventive Composition Procedure,"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27_it_1.html, 검색일자: 2025. 6. 30.



벨기에

내국 최저추가세액 신고서 XML 양식 초안 공개

- ◆ 벨기에 연방경제공공서비스는 2025년 6월 26일, 내국 최저추가세액 신고서(Domestic Minimum Top-Up Tax Return)의 전자제출을 위한 XML 스키마 초안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함²⁴⁾
-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두 개의 XSD(XML Schema Definition)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는 신고서 본문 구조를 정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전화번호, 국가코드 등 보조 정보를 담은 코드 파일임
- 해당 초안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든 설계 단계 문서로, 2025년 4월 11일에 공개된 내국 최저추가세액 신고서 서식 초안의 후속 작업이며, 최종 양식은 확정되는 대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관보를 통해 공표될 예정임
- 신고서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1개월 이내이며, 회계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경우 최초 제출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 됨
- 한편, 벨기에에는 필라2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음
 - 2024년 5월부터 필라2 이행을 위한 기업 등록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내국 최저추가세액 또는 IIR 납부의무에 대해 법인세 선납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사전납부 제도를 도입함
 - 내국 최저추가세액 및 소득산입규칙(IIR)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스웨덴

DAC9 이행을 위한 입법 초안 공개

- ◆ 스웨덴 재무부는 2025년 7월 4일, EU의 DAC9 지침(2025/872)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초안을 발표함²⁵⁾
- DAC9은 최저한세 지침(2022/2523)에 따른 추가세액(Top-Up Tax) 정보보고 의무 및 관련 정보교환 체계를 도입하고, 회원국 관할 당국 간 자동정보교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24) IBFD, "Tax Administration Publishes Draft Minimum Tax Return XML Schema," 2025. 6.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26_be_1.html, 검색일자: 2025. 7. 10.

25) IBFD, "Sweden Proposes DAC9 Implementation Bill," 2025.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4_se_1.html, 검색일자: 2025. 7. 10.

- 해당 법안은 EU 역내 정보교환뿐 아니라, OECD 다자간 권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한 비EU 국가와의 정보교환도 허용하는 체계임
- 스웨덴 과세당국은 보고 대상 기업으로부터 추가 세액 정보보고서를 수취하여, 사전에 정의된 배분 방식에 따라 타국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전달할 예정임
- 법안에는 기밀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일정 조건하에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됨
- 구체적으로, 2027년 이전에 개시되어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의의 노력과 합리적 주의를 기울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 해당 법안은 2026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는 2026년 12월부터 정보교환이 개시될 수 있음
- 현재 공청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 법안은 2025년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핀란드

AOA 규칙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 핀란드 재무부는 2025년 7월 2일,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귀속 규정을 개정하여 공인된 OECD 접근방법 (Authorised OECD Approach, AOA)을 국내세법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예고안을 발표함²⁶⁾
- AOA 접근법은 2010년 OECD 보고서 「고정사업장 이익귀속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고정사업장을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고 기능·자산·위험(FAR)에 기반한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이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임
- 핀란드는 AOA가 반영된 OECD 모델 제7조(2010년판)를 자국 조세조약에 포함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해당 조항을 국내법상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임
- 이번 입법예고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AOA에 부합하는 명확한 고정사업장 이익귀속 규정을 「소득세법」, 「사업소득세법」 및 「국제이중과세 방지법」 등에 명문화함
 - 해당 규정은 조세조약상 OECD 모델 제7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적용되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에 따라 이익을 귀속하도록 규정함
 - 단, 조세조약상 이익귀속 규정이 OECD 모델 제7조와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
-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함

26) IBFD, "MoF Opens Consultation on Introducing Authorized OECD Approach to Attribution of Profits to PEs," 2025. 7.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2_fi_1.html, 검색일자: 2025. 7. 10.



네덜란드

DAC8 규칙 이행을 위한 법안 의회 제출

- ◆ 네덜란드는 2025년 7월 8일, 행정협력지침 개정안 (DAC8, 2023/2226) 이행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²⁷⁾
- 법안은 2026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며, 전자화폐 (electronic money) 및 암호화자산(crypto assets) 관련 세무 정보의 보고 및 교환 의무를 신설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관련 중개인(intermediaries)은 고객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해야 하며, 보고 기한은 정보가 속한 연도 다음 해의 1월 31일까지임
 - 최초 보고 기한은 2027년 1월 31일로, 이는 2026년도 정보에 해당함
 - 보고된 정보는 해당 연도 종료 이후 9개월 이내에 EU 회원국 간 자동 교환됨
 - 아울러 법안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교환 조항도 포함함
 - 150만유로²⁸⁾(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를 초과하는 개인의 국제적 사전해석(cross-border rulings)에 대한 정보
 - 개인의 거주지 판정(rulings on tax residence)에 대한 정보
 - 보고의 지연, 오류, 누락 등의 경우, 최대 103만유로²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중국

인터넷 플랫폼 회사에 대한 세금 신고 법령 발표

- ◆ 중국 정부는 2025년 6월 20일,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정보를 규제하는 법령(국무원 명령 No. 810)을 발표함³⁰⁾³¹⁾
- 이 법령은 세무 서비스 및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하고 통일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 경제의 표준화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27)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Implementing DAC8 Rules to Parliament," 2025. 7.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8_n_1.html, 검색일자: 2025. 7. 11.

28)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약 24억 925만원임

29)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약 16억 5,435만원임

30) Taxnotes, "China Decrees Tax Reporting Requirements for Internet Platforms," 2025. 6. 30.,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legislation-and-lawmaking/china-decrees-tax-reporting-requirements-internet-platforms/2025/06/30/7sl6s>, 검색일자: 2025. 7. 21.

31) IBFD, "China's State Council Mandates Tax Information Reporting for Digital Platform Operators," 2025. 6.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24_cn_1.html, 검색일자: 2025. 7. 21.

-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은 각 분기 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전 분기의 과세정보를 포함하여 도메인 이름, 사업 유형, 주요 운영 주체의 이름 및 통합 코드를 제출하여야 함
- 이 법령은 플랫폼 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정 공공 편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³²⁾이나 과세 대상이 아닌 개인에 대한 정보 보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과세당국에 보고된 정보³³⁾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2만위안³⁴⁾에서 50만위안³⁵⁾까지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플랫폼 운영자 또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 면제됨



인도

금융서비스센터에 지급된 수수료 등 원천징수의무 면제

- ◆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25년 6월 20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TDS)의무를 면제하는 고시 No. 67/2025를 발표함³⁶⁾³⁷⁾
 - 금융회사에 지불된 리스, 운임 또는 임대료에 대한 이자
 -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투자 자문 수수료, 펀드 관리 기관에 지급되는 관리 또는 성과 수수료
 - 회계, 세무 및 금융 범죄 준수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전문 컨설팅, 자문비용
 - 청산이 승인된 회사, 증권 거래소 및 예탁 기관에 대한 지불액
- 이번 개정은 IFSC 내에서 비즈니스 수행의 용이성을 높이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며 유동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IFSC는 양식 1의 명세서를 각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TDS 면제가 발생하는 10년간 양식 1의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고 확인하여야 함

32) 배달, 운송, 기사 서비스 등

33) 과세당국이 원천징수, 위임장 신고, 부처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

34)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3만원임

35) 2025년 7월 1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582만원임

36) IBFD, "India Waives Withholding Tax on Advisory, Professional Fees to Units in Financial Centres from 1 July 2025," 2025. 6. 2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24_in_1.html, 검색일자: 2025. 7. 21.

37) Treelife, "CBDT Notifies TDS Exemption for Payments to IFSC Units (Effective from July 1, 2025)," 2025. 6. 30., <https://treelife.in/news/cbd-t-notifies-tds-exemption-for-payments-to-ifsc-units-effective-from-july-1-2025/>, 검색일자: 2025. 7. 21.

- IFSC에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은 IFSC로부터 양식 1의 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TDS 공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TDS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된 소득에 관한 내용을 분기별 TDS 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함
- IFSC가 양식 1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용기간인 10년을 초과하여 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TDS를 공제하여야 함
-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함



뉴질랜드

원예업계에서 약 4,500만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미신고 세금 적발

-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5년 6월 18일, 원예업계에서 위법적 급여 지급(under the table) 등 일부 우려스러운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음³⁸⁾
- 지난 10개월 간 국세청은 원예업계에서 약 4,500만 뉴질랜드달러³⁹⁾ 규모의 미신고(undeclared) 세금을 적발함
- 국세청은 일부 업계 종사자들이 가브리엘 사이클론(Cyclone Gabrielle)⁴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 중이며,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 증가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납세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언급함
- 위법적 급여 지급과 더불어 현금 매출(cash sales)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⁴¹⁾ 정기 급여(schedular payments)에 원천징수세가 공제되지(deducted) 않거나 잘못된 세율로 공제하는 경우 및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재배자(grower)들은 보통 하도급 회사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해당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회사는 복잡한 사업 구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은폐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행위는 세금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수당(benefit payments)을 수령하거나, 자녀 지원(child support)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을 회피하는 데에 이용됨
- 국세청은 하도급 회사들로 하여금 근로자 임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38) IBFD, "Sweden Proposes DAC9 Implementation Bill," 2025. 7.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7-04_se_1.html, 검색일자: 2025. 7. 10.

39) 2025년 7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억 1,300만원

40) 가브리엘 사이클론은 2023년 2월 뉴질랜드의 Hawke's Bay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임

41) 하도급자(contractor)에 대한 지급 포함

- 현재 국세청은 하도급 회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audit) 및 기소(prosecution)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원예산업은 현금 사용과 이민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 착취가 일어나기 쉬운 분야이며,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뉴질랜드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OECD

BEPS Action 14 상호합의절차 관련 회원국 상호평가 결과 발표

- ◆ OECD는 2025년 6월 26일, 효과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BEPS Action 14(상호합의절차, MAP) 최소기준 이행과 관련한 회원국 상호평가(peer review) 결과 36건을 발표함⁴²⁾ 43)
- OECD는 지난 2025년 3월, 도미니카,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페루 등 10개국에 대한 간소화된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⁴⁴⁾ 금번 발표는 이후의 추가 발표임
- BEPS Action 14 상호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론은 다음의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함
 - (전체 상호평가) 상호합의절차(MAP)에 있어 실질적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4년마다 전체 상호평가(full peer review) 절차를 밟으며, MAP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지속적인 기준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절차임
 - (간소화된 상호평가) 실질적 MAP 절차가 없는 국가들은 2단계로 구성된 간소화된 상호평가(simplified peer review) 절차를 밟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향후 MAP 사례 증가에 대비해 보다 견고한 MAP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임
-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간소화된 1단계 평가(Simplified Stage 1 reviews):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총 30개 국가
 - 전체 1차 평가(Cycle 1 full peer reviews):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영국의 총 6개 국가 대상
 - 전체 평가에 참여한 6개 국가는 세 번째 평가를 밟은 것이며, Action 14 최소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받음

42) OECD, "Inclusive Framework on BEPS reports continuing progress towards making tax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2025. 6. 26.,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5/06/inclusive-framework-on-beps-reports-continuing-progress-towards-making-tax-dispute-resolution-more-effective.html>, 검색일자: 2025. 6. 27.

43) IBFD, "OECD Releases New Batches of BEPS Action 14 Peer Review Reports," 2025. 6.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6-26_o2_1.html, 검색일자: 2025. 6. 27.

44) OECD, "Inclusive Framework on BEPS shows progress in making dispute resolution more effective," 2025. 3. 4.,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5/03/inclusive-framework-on-beps-shows-progress-in-making-dispute-resolution-more-effective.html>, 검색일자: 2025. 6. 27.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EU

◆ EU 이사회, 2026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에 합의 (2025. 7. 9.)¹⁾

※ 매년 EU 집행위원회가 EU 장기 예산 한도 내에서 EU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면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 입장 채택 또는 조정 절차 등 합의 과정을 거쳐 예산을 확정함

- (주요 경과) 지난 6월에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EU 연간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EU 이사회가 검토를 거쳐 7월에 예산안에 대한 입장에 합의함
- (EU 이사회의 검토 원칙) 신중하고 현실적인 예산 편성, 우선순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제공, EU의 주요 문제 해결을 목표로 EU 이사회의 입장을 수립
- 전년도 예산 대비 과도한 증액을 지양하면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적정 예산 수준을 보장
- 우크라이나 및 중동 위기, 이민자 유입 부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EU 장기 예산 계획(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한도 내에서 충분한 여유 자금(margin)을 확보
- (예산 조정 결과) EU 이사회가 합의한 2026년 EU 예산안의 규모²⁾는 승인기준으로 1,862억 4천만유로, 지급기준으로 1,864억 9천만유로로 당초 집행위원회 편성 예산안 대비 각각 약 13억 700만유로, 약 6억 9,700만유로 감액(기타 특수 기금 제외 금액)
-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는 4억 8,800만유로, ‘결속, 회복력 및 가치’ 분야는 7억 7,500만유로, ‘천연자원 및 환경’ 분야는 1,800만유로 감액(승인기준 예산 금액)
- ▶ 2026년 신규 발생 수위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회원국 예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산 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상당히 늘어난 예산 증액분을 축소

1) EU 이사회, "EU annual budget: Council agrees its position on the 2026 draft budget," Press releases, 2025. 7. 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7/09/eu-annual-budget-council-agrees-its-position-on-the-2026-draft-budget/>, 검색일자: 2025. 7. 22.
 _____,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6: Council position," 2025. 7. 4.,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1029-2025-INIT/en/pdf>, 검색일자: 2025. 7. 22.

2) 예산 금액은 승인(commitments)기준과 지급(payments)기준으로 제시됨. 승인기준은 미래의 지급을 위해 해당 연도에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계약 의무의 총금액을 의미함.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또는 과거에 체결된 법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하는 금액임. 지급기준 예산은 승인기준 예산과 같은 해에 집행될 수도 있고 다년도 프로젝트의 경우 이후 다수 해에 걸쳐 집행될 수 있음

- ▶ Horizon Europe³⁾(-3억 6,795만유로), 유럽연결기금⁴⁾(-8,610만유로), EU 복구 기금⁵⁾ 자금 조달 비용(-3억 300만유로), Erasmus+⁶⁾(-2억 5,773만유로) 등을 집행위원회 예산안 대비 감액
- '이주 및 국경관리' 분야는 2,100만유로 감액하고 '안보 및 국방'과 '파트너 및 세계' 분야의 총액은 유지(승인기준 예산 금액)
- (향후 절차) EU 이사회는 9월에 서면 절차를 통해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 채택할 예정

◆ EU 집행위원회,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안(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발표(2025. 7. 16.)⁷⁾

※ EU의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는 7개년 재정계획을 담은 EU의 장기 예산으로 EU 우선순위에 지출 가능한 연간 예산의 최대 한도를 규정함⁸⁾

- (예산 규모)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안의 규모는 승인기준 약 1조 9,849억유로, 지급기준 약 1조 9,801억유로이며 이는 EU 국민총소득의 약 1.26%에 해당

표 1 2026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EU 이사회 입장		차이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2,054	23,309	21,566	23,139	-488	-170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1,726	74,617	70,952	74,135	-775	-482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56,593	59,698	56,593	59,698	0	0
2.b. 회복력 및 가치	15,134	14,920	14,359	14,437	-775	-482
3. 천연자원 및 환경	56,972	53,133	56,954	53,127	-18	-7
4. 이주 및 국경관리	5,010	3,887	4,989	3,864	-21	-23
5. 안보 및 국방	2,804	2,251	2,804	2,251	0	0
6. 파트너 및 세계	15,505	16,512	15,505	16,503	0	-9
7. 유럽 공공 행정	13,475	13,475	13,469	13,469	-6	-6
합계	187,546	187,184	186,239	186,488	-1,307	-697
(EU 27개국 GNI 대비 %)	0.97	0.97	0.97	0.97	-0.01	0.00

주 합계는 기타특수기금이 제외된 금액임

출처 EU 이사회, "Breakdown by heading for "total expenditure" in the MFF headings," 2025. 7. 9.,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ardd3fzi/council-position-on-the-draft-eu-budget-2026.pdf>, 검색일자: 2025. 7. 22.

3) EU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

4) Connecting Europe Facility: 운송, 에너지, 디지털 분야의 EU 국가 간 상호 연결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그램

5) European Union Recovery Instrument: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 복구 계획에 제시된 조치들에 대한 자금을 제공

6) 유럽에서의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7) EU 집행위원회, "An ambitious budget for a stronger Europe: 2028-2034," press release, 2025. 7.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47, 검색일자: 2025. 7. 22.

_____, "An ambitious budget for a stronger Europe: 2028-2034," 2025. 7. 16.,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eu-budget/long-term-eu-budget/eu-budget-2028-2034_en#paragraph_55337, 검색일자: 2025. 7. 22.

_____,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the next long-term EU budget," 2025. 7.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5_1851, 검색일자: 2025. 7. 22.

8) 현재 시행 중인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는 2020년 12월에 채택되었으며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EU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에 최종 개정되었음

표 2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안 개요

(단위: 십억유로, 경상가격 기준(2% 디플레이터 적용), %)

구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합계
승인기준 예산	269.5	282.9	283.1	290.4	294.1	285.4	279.7	1,984.9
(EU GNI 대비 비율)	1.31	1.33	1.29	1.29	1.27	1.19	1.13	1.26
1. 경제, 사회 및 지역적 통합, 농업, 농촌, 해양의 번영 및 안보	163.1	160.9	158.1	155.6	152.3	140.1	132.2	1,062.2
2. 경쟁력, 번영 및 안보	66.9	81.3	83.2	87.3	88.6	90.7	91.6	589.6
3. 글로벌 유럽	24.6	25.1	25.6	30.6	35.8	36.4	37.1	215.2
4. 공공행정	14.9	15.6	16.3	16.9	17.5	18.1	18.7	117.9
지급기준 예산	270.0	300.7	297.1	292.8	277.4	274.7	267.5	1,980.1

출처 EU 집행위원회, "Annex to the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laying down the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the years 2028 to 2034," 2025. 7. 15.,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00bec9c4-32f7-4b9b-acff-1fd5c117d614_en?filename=COM_2025_571_1_EN_annexe_proposition_part1_v1.pdf, 검색일자: 2025. 7. 22.

- (주요 특징)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에서 더욱 간결하고 유연하며 영향력 있는 EU 예산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제안함
 - 예산 전반에서 유연성을 강화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나 신규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
 - 더욱 단순하고 조화로운 EU 재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기업의 지원 자금을 대한 접근성을 제고
 - 투자 및 개혁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National and Regional Partnership Plans)’을 통해 지역 수요 맞춤형 예산으로 경제, 사회, 지역적 결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을 보장
 - 유럽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혁신을 강화하며, 청정 스마트 기술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
 - 회원국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선순위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수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자체 자원 패키지를 제시
- (주요 우선순위)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재정지원이 EU의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 예산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편성
 - (사람, 회원국, 지역에 대한 투자)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약 8,650억유로 규모)’을 통해 회원국 지역에서 집행하는 EU 기금들을 결속정책과 농업 정책을 중심으로 하나의 일관된 전략으로 통합해 실행
 - ▶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계획’은 통합 촉진, 지역별 격차 축소, 미래 과제 해결을 위한 투자와 개혁 방안을 모색하며 집행위원회, 회원국, 지역 사회,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설계·실행
 - ▶ 저개발 지역 지원에 최소 2,180억유로의 예산 보장
 - ▶ 농어민 소득지원에 농업 시설 투자, 청년 농민 지원을 위한 3,000억유로의 전용 예산을 배정하고, 지급, 통제, 감사 등의 자금 규정을 더욱 간소화할 예정 등
 - (교육 및 민주적 가치 육성) EU 장기 예산은 인적 역량, 문화, 미디어 및 가치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

- ▶ 강화된 Erasmus+ 프로그램(기존 대비 예산 50% 증액)은 기술 연합(Union of Skills)⁹⁾의 근간이 될 것이며 교육의 이동성, 결속,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둠
- ▶ 신규 AgoraEU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유럽 문화의 다양성, 시청각 및 창작 분야,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참여 등을 지원
- (경쟁력, 연구·혁신을 통한 번영 촉진) 약 4,090억 유로 규모의 신규 '유럽 경쟁력 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을 통해 전략적 기술에 투자
- ▶ 청정 기술 및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보건·바이오기술·농업·바이오 경제, 국방 및 우주 분야를 집중 지원
- (국민 보호 및 위기 대비·회복력 구축) 'EU 위기 대비 연합(EU Preparedness Union)¹⁰⁾ 전략'에 자금을 지원하여 유럽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예방, 대응, 복구에 이르는 위기관리 전반을 지원
- (유럽 안보) 장기 예산은 유럽 방위 연합(European Defence Union) 구축을 지원할 예정
- ▶ '유럽 경쟁력 기금'의 방위, 안보 및 우주 분야 투자 지원에 기존 예산의 5배인 1,310억유로를 배정
- ▶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의 군 기동력 관련 예산을 10배 확대해 민간-군 겸용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방위 개발 전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
- ▶ EU 국경 및 내부 안보 강화를 위해 이민 관리 예산을 기존 예산의 약 3배인 740억유로로 증액
- (세계에서 더 강한 유럽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자금을 주축으로 대외 정책 관련 재정을 강화
- ▶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약 2,000억유로 규모의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자금을 통해 EU 후보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150억유로의 전용 예비 자금(reserve capacity)도 확보
- ▶ 2028년부터 2034년까지 1,000억유로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 가능(군사 작전 지원은 유럽 평화 기금(European Peace Facility)¹¹⁾을 통해 계속 지원)
- ▶ 평화 유지, 국제 안보 강화, 국제협력 촉진 등을 위해 공동 외교 및 안보 정책에 34억유로의 자금 지원
- (신규 재원 제안) 이번 장기 예산안에서 다섯 가지 신규 자체 재원(안)을 제시
- 신규 자체 재원과 현행 자체 재원의 개선을 통해 연간 약 585억유로의 수입을 창출하여 회원국의 EU 예산 부담을 완화할 전망
- (향후 절차) 향후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EU 장기 예산과 수입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규정 채택은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 신규 자체 재원 등 일부 수입 제도 관련 결정은 이사회 의 만장일치 동의와 각국 헌법 요건에 따른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

9) 2025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EU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연합(Union of Skills) 전략을 발표함. 인적 역량 개발, 교육 훈련 제공,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교육 및 역량 강화, 기술 취득 장소와 상관없이 EU 전역에서의 기술·자격 활용 지원, 고급 인재 유치 등을 목표로 함

10) 2025년 3월에 발표된 EU 위기 대비 연합 전략은 자연재해, 전염병, 산업재해, 사이버 공격, 지정학적 위기 등 새로운 위기와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럽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임. 7개 목표와 30개 주요 조치로 구성(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 바람. EU 집행위원회, "EU Preparedness Union Strategy to prevent and react to emerging threats and crises," 2025. 3. 2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856, 검색일자: 2025. 7. 22.)

11) 유럽평화기금은 분쟁 방지, 평화 유지, 국제 안보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조달

표 3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안에서 제시된 신규 자체 자원(안)

(단위: 억유로)

구분	내용	규모(연평균)
EU 배출권 거래제(ETS) 기반 자원	ETS1 ¹²⁾ 에서 창출된 수익의 일부를 조정하여 EU 예산에 활용	9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익 기반 자원 ¹³⁾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조정하여 EU 예산에 활용	14
전자폐기물 기반 자원	전자폐기물의 무게에 단일 요율을 적용	150
담배소비세 기반 자원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자체 자원으로 설정 ¹⁴⁾	112
유럽을 위한 대기업 기여금(CORE) ¹⁵⁾	EU 내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연 순매출액 1억유로 이상 기업 징수하는 정액 기여금	68
기타(현행 자체 자원 개선 등)	기존 자체 자원 징수 비용 20% 절감,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부과하는 자체 자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등	143
합계	-	585

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출처 EU 집행위원회, "An ambitious budget for a stronger Europe: 2028-2034," press release, 2025. 7.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1847, 검색일자: 2025. 7. 22.

- ◆ EU 이사회(유로그룹),¹⁶⁾ 2026년 유로지역 재정기조에 대한 성명 채택(2025. 7. 7.)¹⁷⁾
 - (고용)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유지 중이며, 고용 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보임¹⁸⁾
 - (투자) 대부분 회원국에서 회복복구기금(RRF)¹⁹⁾과 기타 EU 기금 지원으로 투자 증가 예상
 - (재정) 유로지역 정부 채무는 2024년 GDP 대비 90% 수준에서 2025~2026년에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적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GDP 대비 3%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경제) 유로지역 경제는 여러 차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고 있음
- (경제 성장) 무역 긴장 등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있으나, 2026년에는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에 힘입어 성장 가속화 예상

12) EU Emissions Trading System(ETS)1: 2027년부터 도입되는 ETS2(건물, 도로 운송, 기존 ETS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규모 산업에 적용)와 구분되는 기존 ETS 제도로 대규모 산업 설비, 발전소, 항공 및 해운 등의 탄소 배출에 적용

13)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하여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출처: 환경부, 「알기쉽게 풀어쓰는 CBMA 전환기간 이행을 위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 2024.)

14) 담배 제품 소비량에 각 국가에 적용하는 최소 소비세율을 곱한 후 15%의 비율을 적용

15) 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

16) EU 회원국 중 유로지역(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 국가들의 재무장관 회의

17) EU 이사회(유로그룹), "Eurogroup statement on the fiscal stance for the euro area in 2026," 2025. 7. 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7/07/eurogroup-statement-on-the-fiscal-stance-for-the-euro-area-in-2026/>, 검색일자: 2025. 7. 8.

18) 2025년 3월 EU 27개국의 실업률은 6.0%를 기록하였고, 4월과 5월 각각 5.9%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유로지역 20개국의 경우 2025년 3월 6.4%에서 4월 6.2%, 5월 6.3%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EU 통계청, "Unemployment by sex and age - monthly data," 2025. 7. 18.,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UNE_RT_M_custom_7680578/bookmark/table?lang=en&bookmarkId=2feeff57-57c9-4278-a50b-7e2279d699c2&c=1696497606157, 검색일자: 2025. 7. 10.)

19)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은 팬데믹 충격 이후 EU 경제 회복을 위한 2021~2026년 임시 지원인 차세대 EU 기금(Next Generation EU)의 주요 정책 도구로 회원국의 개혁 및 투자 계획을 지원함(EU 집행위,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https://commission.europa.eu/business-economy-euro/economic-recovery/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en?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7. 10.)

- 2024년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긴축적이었고, 2025년은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경제 둔화와 물가상승 압력 감소를 고려할 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방위비 지출 제외 시 유로지역 재정은 2026년에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함
- (방위비 증가 영향) EU 최우선 과제인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회원국이 2025~2028년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국가면책조항²⁰⁾ 발동을 요청했으며, 방위비 증액으로 기존 재정 경로에 비해 확장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IMF

◆ IMF 집행위원회, 유로지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5. 7. 11.)²¹⁾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현황 및 전망)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0.8%, 2026년 1.2%, 2027년 1.3%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국방 및 사회기반시설 지출 증가에 따른 일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과 불확실성 증가 및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실질 GDP(연평균)	3.5	0.4	0.9	0.8	1.2	1.3	1.3	1.2
실업률	6.7	6.6	6.4	6.4	6.3	6.2	6.2	6.2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8.4	5.4	2.4	2.1	1.9	2.0	2.0	2.0
재정수지(Fiscal balance, GDP 대비 %)	-3.5	-3.6	-3.1	-3.2	-3.4	-3.5	-3.5	-3.6
채무(Gross public debt, GDP 대비 %)	89.5	87.4	87.7	89.7	90.4	91.9	91.9	92.9
수출(Exports) ¹⁾	7.3	-0.8	1.0	0.0	1.4	2.2	2.6	2.5
수입(Imports) ¹⁾	8.3	-1.4	0.2	1.0	1.8	2.4	2.8	2.7

주 1. 2025년 이후 전망치는 IMF 각국 팀의 최신 전망을 종합하여 산출
1) 유로지역 내 무역 포함

출처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Euro Area," 2025. 7. 11.

20) 국가면책조항(National escape clause(NEC))은 유럽연합(EU) 또는 유로지역 회원국이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EU 재정 규율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1)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Euro Area," 2025. 7.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7/10/pr-25248-euro-are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5-consultation>, 검색일자: 2025. 7. 14.

- (위험)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잠재적 관세 인상 및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은 기존 예상보다 수요와 성장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릴 경우 위험요인이 증가하여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정책 권고) 복잡한 세계 환경 속에서 성장 잠재력 및 재정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전략이 필요하며,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 및 물가안정은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EU 단일시장 강화를 위해 기업 확장 및 혁신을 위한 규제 간소화 및 법적 기준 통일이 필요하며,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시장 연합(capital markets union)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임
- ◆ IMF 집행위원회,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5. 7. 14.)²²⁾
- (현황 및 전망) 프랑스 경제는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이 1.1%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파리 올림픽의 영향으로 인해 서비스와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 무역 긴장,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시장 변동성으로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0.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성장률이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심화되는 지정학적 분적화(geoeconomic fragmentation)과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상당한 하방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그러나, 무역 긴장 완화와 구조 개혁 모멘텀 재개는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장 전망을 개선하며,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촉진할 수 있음
- (정책 권고) 높은 공공 부채 증가와 더불어 경기 회복에 대한 국내외적인 역풍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고령화된 노동력 속에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 노력이 중요.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에서 평가된 바와 같이 강력한 금융감독 및 거시건전성 조치는 적절하나,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추어 계속 발전시킬 필요

표 5 프랑스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GDP증가율(연평균)	2.8	1.6	1.1	0.6	1.0	1.2
실업률	7.3	7.3	7.4	7.7	7.5	7.3
물가상승률(CPI, 연평균)	5.9	5.7	2.3	1.1	1.5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alance, GDP 대비 %)	-4.7	-5.4	-5.8	-5.4	-5.7	-6.0
일반정부 총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111.4	109.6	113.1	116.5	119.1	121.5
경상수지(GDP 대비 %)	-1.2	-1.0	0.5	-0.1	-0.3	-0.5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20,155					

주 1. 2025~2027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출처 IMF, "France: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7. 14.

22)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France," 2025. 7. 14.,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7/11/pr-25249-france-imf-concludes-2025-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5. 7. 14.

◆ IMF 집행위원회, 영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5. 7. 25.)²³⁾

- (현황 및 전망) 영국은 2024년 하반기 성장률이 저조하였으나, 기업투자에 힘입어 2025년 1분기에 반등하여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2%,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규제된 가격 인상, 고용주의 국민보험료율 인상(기존 13.8%에서 15%로 인상),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 약화(waning base effects)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며,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3.2%에서 2026년에는 2.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예상보다 긴축된 금융 여건과 가계의 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증가는 민간

소비 회복을 저해하고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 지속적인 세계 무역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 활동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하며 민간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정책 권고) 중기 재정 전략이 부채 안정화와 성장 지원 간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고 평가됨. 또한, 중기적으로 계획대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구 고령화, 국방비 지출, 기후 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구조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의 실행 순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표 6 영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실질GDP증가율(연평균)	4.8	0.4	1.1	1.2	1.4	1.5
실업률	3.8	4.1	4.3	4.5	4.4	4.3
물가상승률(CPI, 연평균)	9.1	7.3	2.5	3.2	2.3	2.0
종합재정수지(Public sector overall balance, GDP 대비 %)	-5.0	-4.8	-4.7	-4.1	-3.5	-2.8
공공부문 순금융채무(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 GDP 대비 %) ¹⁾	80.5	81.1	81.5	82.9	84.0	84.1
경상수지(GDP 대비 %)	-2.1	-3.5	-2.7	-3.4	-3.3	-3.1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20,155					

주 1. 2025-2027년은 전망치(Projections)

2. 쿼터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1) 공공부문 순금융채무(PSNFL)는 영국은행 및 추가적인 부채(예: 기금적립형 연금제도)를 포함한 통계로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보다 폭넓은 재무상태 지표이며, 광범위한 금융 자산(예: 학생 대출)은 제외됨

출처 IMF, "United Kingdom: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7. 25.

23)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United Kingdom," 2025. 7. 2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7/23/pr-25262-united-kingdom-imf-executive-board-concludes-2025-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5. 7. 28.

-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업데이트 'Tenuous Resilience amid Persistent Uncertainty' 발표(2025. 7. 29.)²⁴⁾
 -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에 3.0%, 2026년에 3.1%로 2025년 4월 세계경제 전망(WEO)보다 2025년은 0.2%p, 2026년은 0.1%p 높은 수준임
 - 이는 더 높은 관세를 예상한 선행적 움직임(front-loading)²⁵⁾이 예상보다 강했음을 반영하며, 4월에 발표된 것보다 낮은 평균 실효 미국 관세율(effective US tariff), 약세 달러로 인한 금융 환경 개선, 일부 국가에서의 재정 확대에 기인
 - ▶ 선진국의 경우, 2025년에 1.5%, 2026년에 1.6%로 예상(2025년 4월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0.2%p, 0.1%p 높은 수치임)
 - ▶ 미국의 실질 GDP성장률은 2025년 1.9%, 2026년은 2.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유로지역에서는 2025년 성장률이 1.0%로 가속화되고 2026년에는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는 주로 2025년 1분기 아일랜드의 강력한 GDP 실적에 의해 주도된 것임²⁶⁾
 - ▶ 중국의 2025년 실질 GDP성장률은 4.8%이며, 이는 2025년 상반기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활력과 미중 관세의 대폭적인 감소를 반영한 것임. 2026년 성장률도 유효 관세율 하락을 반영하여 0.2%p 상향 수정되어 4.2%로 전망
-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성장은 2025년에 4.1%로, 2026년에는 4.0%로 예상
- (위험) 전체적인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은 4월 세계경제전망(WEO)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 실효관세율이 반등한다면 더 약한 성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 증가로 활동에 더 큰 부담을 주어 무역 및 생산의 성장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공공부채가 높고 재정적자가 큰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책 권고) 무역긴장을 완화하고, 물가 및 금융안정을 유지하며, 재정적 완충장치를 복원하고, 구조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신뢰, 예측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필요. 국가들은 명확하고 투명한 무역 프레임워크를 촉진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이 필요.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교육, 규제, 경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생산성과 잠재 성장을 더욱 높일 수 있음

24)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Economy : Tenuous Resilience amid Persistent Uncertainty, 2025. 7. 3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7/29/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5>, 검색일자: 2025. 7. 30.

25) 미래의 부정적인 변화(관세 인상,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예측이 현재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의미함)

26) 아일랜드는 유로 지역 GDP의 5% 미만을 차지하나, 미국으로의 아일랜드 제약 수출(pharmaceutical exports)이 역사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2025년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p를 상향 수정함, 아일랜드를 제외할 경우, 수정 폭은 0.1%p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표 7 2025년 7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단위: %)

구분	추정		전망		2025년 4월 전망 대비 ¹⁾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5년	2026년
세계 경제	3.5	3.3	3.0	3.1	0.2	0.1
선진국	1.8	1.8	1.5	1.6	0.1	0.1
미국	2.9	2.8	1.9	2.0	0.1	0.3
유로지역	0.5	0.9	1.0	1.2	0.2	0.0
독일	-0.3	-0.2	0.1	0.9	0.1	0.0
프랑스	1.6	1.1	0.6	1.0	0.0	0.0
이탈리아	0.7	0.7	0.5	0.8	0.1	0.0
스페인	2.7	3.2	2.5	1.8	0.0	0.0
일본	1.4	0.2	0.7	0.5	0.1	-0.1
영국	0.4	1.1	1.2	1.4	0.1	0.0
캐나다	1.5	1.6	1.6	1.9	0.2	0.3
그 외 선진국 ²⁾	1.9	2.2	1.6	2.1	-0.2	0.1
한국	1.6	2.0	0.8	1.8	-0.2	0.4
신흥개도국	4.7	4.3	4.1	4.0	0.4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6.1	5.3	5.1	4.7	0.6	0.1
중국	5.4	5.0	4.8	4.2	0.8	0.2
인도 ³⁾	9.2	6.5	6.4	6.4	0.2	0.1
유럽 신흥개도국	3.6	3.5	1.8	2.2	-0.3	0.1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	2.4	2.2	2.4	0.2	0.0
중동 및 중앙 아시아	2.4	2.4	3.4	3.5	0.4	0.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6	4.0	4.0	4.3	0.2	0.1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 ⁴⁾	1.0	3.5	2.6	1.9	0.9	-0.6
선진국	0.2	2.0	1.8	1.2	0.2	-0.8
신흥개도국	2.3	5.8	3.8	3.2	2.0	0.0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⁵⁾	-16.4	-1.8	-13.9	-5.7	1.6	1.1
비연료	-5.7	3.7	7.9	2.0	3.5	1.8
세계소비자물가 ⁶⁾	6.6	5.6	4.2	3.6	-0.1	0.0
선진국 ⁷⁾	4.6	2.6	2.5	2.1	0.0	-0.1
신흥개도국 ⁸⁾	8.0	7.7	5.4	4.5	-0.1	-0.1

주 실질실효환율은 2025. 5. 23.-2025. 6. 20.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국가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 1) 현재 및 2025년 4월 WEO 전망에 대한 반응률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5년 4월 WEO 전망 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지역(euro area) 국가 제외
-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3-24 회계연도(2023년 4월-)는 2023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2025년 6.7%, 2026년 6.4%
-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5. 6. 26. 기준) 기준 배럴당 평균 유가는 2025년 \$68.18, 2026년 \$64.33
- 6) 베네수엘라 제외
- 7) 물가상승률: 유로지역 2025년 2.0%, 2026년 1.8%, 일본 2025년 3.3%, 2026년 2.1%, 미국 2025년 2.8%, 2026년 2.5%

출처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5, Table 1, p. 9(한국 수치는 Annex 참고)



OECD

- ◆ OECD, 「2025년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25: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발표(2025. 7. 9.)²⁷⁾
 - ※ OECD의 「2025년 고용전망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최신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²⁸⁾
- (중장기 전망)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OECD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퇴출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OECD 회원국의 노동 가능 인구(20세에서 64세)는 감소하고, 노령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0년 19%에서 2023년 31%로 급증했으며, 2060년에는 5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생산성 성장의 상당한 가속화가 없다면 고령화로 인해 OECD 지역에서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2006~2019년 연평균 1%에서 2024~2060년 연평균 0.6%로 감소)
- (현황 및 전망) OECD의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율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실업률은 많은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둔화의 초기 신호가 나타남.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부문에서 노동 시장의 긴축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징후가 보이지만 노동력 부족현상은 여전히 존재함. 앞으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노동 시장이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OECD의 실업률은 2022년 1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락하여 2023년 2분기에 4.8%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다 2025년 1분기 실업률은 4.9%로 유지 중임
 -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고용과 노동력 참여의 성별 격차가 좁아지고 있음. 2024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 사이에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보다 약 0.32%포인트 더 상승했으며, 참여율의 성별 격차는 0.3%포인트 좁아짐

27)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2025. 7. 9.,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mployment-outlook-2025_194a947b-en.html, 검색일자: 2025.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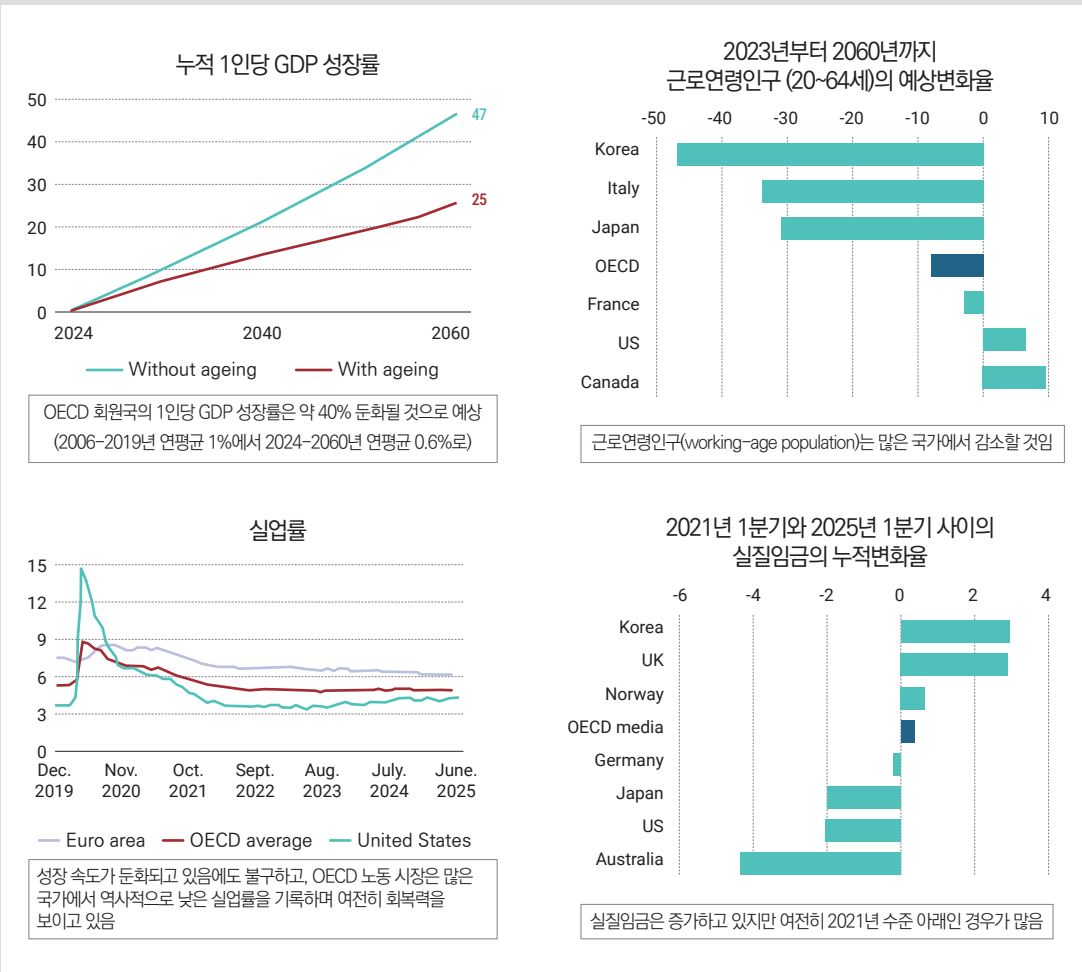
28) OECD Employment Outlook 2025의 각 장은 인구 고령화라는 큰 주제 아래 노동 시장의 변화, 경제 성장, 세대 간 불평등,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역할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 제1장에서는 불확실한 노동 시장 속에서도 임금이 회복되고 있음을 분석(OECD 회원국의 최신 노동 시장 동향과 전망 내용 포함)하고, 제2장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과 세대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음.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노동력 고령화 시대에 성장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직업 이동성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정책 권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1인당 GDP 성장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 여성, 이주민 등 미활용 노동자원의 활용 필요. 고령 근로자의 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진로상담 및 평생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근로자에 일자리 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령 포괄 고용, 구직지원, 임금보험(wage insurance),²⁹⁾ 지속적인 기술 개발 등의 정책이 필요. 또한 AI 등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

그림 1 고용전망 관련 주요 지표 인포그래픽

(단위: %)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2025. 7. 9., p. 15, infographic 1

29) 임금보험(Wage Insurance)은 재취업에 성공했으나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때, 그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현재 임금과 이월 이전의 임금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상실 후 노년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을 완화하는 데 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현재까지 임금보험은 주로 노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의 무역으로 인한 실직 노년 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 무역 조정 지원(Reemploymen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RTAA)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음(출처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2025. 7. 9., p. 278 내용을 참고)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 OBBBA*(트럼프 감세 법안; H.R. 1)³⁰⁾ 최종 확정 (2025. 7. 3.)³¹⁾

*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불리는 OBBBA는 지난 5월 22일에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수정(7. 1.)되었으며, 상/하원 최종 합의(resolving differences)를 거쳐 7월 4일에 대통령의 법안 서명으로 입법 발효³²⁾
- (주요 내용) 동 법안의 위원회별 여러 분야 간 상호 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재정적자 순 영향(net effect)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3.4조달러로 추정
 - 한편, CRFB는 이자 비용(7,130억달러)을 반영할 경우 재정적자 총 규모는 4.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기타

-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일 재차 연기 및 일괄 관세(10%)는 유지(2025. 7. 7.)³³⁾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①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특정 국가에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 - 이후 조정을 통해 ② 별도 관세를 90일 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① 상호관세 부과) 일괄 관세(10%) 및 별도 관세 발표(2025. 4. 2.)³⁴⁾
 - ▶ 행정명령(14257)³⁵⁾ 서명을 통해 모든 무역 상대국 수입품(all imports from all trading partners)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2025. 4. 5.-)하고 2025년 4월 9일부터는 별도 지정국가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별도 지정되지 않은 국가는 10%의 일괄 관세만 부과)
 - ▶ 기존에 부과되었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에서 예외를 두며, 기존 조치 그대로 적용

30) P.L. 119-21

31) 백악관, "President Trump's One Big Beautiful Bill Is Now the Law," 2025. 7. 4.,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7/president-trumps-one-big-beautiful-bill-is-now-the-law/>, 검색일자: 2025. 7. 29.

32) CRFB, "Comparing the Senate and House OBBBAs," 2025. 7. 2., <https://www.crfb.org/blogs/comparing-senate-and-house-obbba>, 검색일자: 2025. 7. 23.

33) 백악관, "Extending The Modification Of The Reciprocal Tariff Rates," 2025. 7. 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extending-the-modification-of-the-reciprocal-tariff-rates/>, 검색일자: 2025. 7. 22.

34) 백악관,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 4.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persistent-annual-united-states-goods-trade-deficits/>, 검색일자: 2025. 7. 23.

35) Executive Order 14257: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 ② 상호 별도 관세 조정 행정명령(14266)³⁶⁾ 서명을 통해 2025년 4월 10일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던 상호관세 10%만 부과하고, 별도 관세는 90일간(2025. 4. 10.~2025. 7. 8.) 유예³⁷⁾ 발표(2025. 4. 9.)
- (주요 내용) 기조정된 상호 별도 관세 부과일(2025. 7. 9.~)을 재차 조정(2025. 8. 1.~)한 행정명령에 서명 - 모든 무역 상대국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 행정명령(14257; 수정 내용 포함)의 조건에 따라 10%의 상호 일괄 관세는 유지
- 중국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12일에 발효된 행정명령(14298)³⁸⁾(중국과의 협의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³⁹⁾에 따라 시행중인 별도의 관세 유예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본 명령에 의해 변경되지 않음

일본

-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2025. 7. 31.)⁴⁰⁾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135조 9,808억엔, 세출 결산총액은 123조 239억엔이며, 순 잉여금은 2조 2,645억엔 규모
- 세입 순 증가액은 -1조 5,973억엔, 세출 불용액은 4조 3,109억엔이며, 세입 순 증가액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에서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을 공제한 결산 순 잉여금 2조 2,645억엔은 「재정법」 제6조⁴¹⁾에 따라 최소 2분의 1의 금액이 국채 상환에 충당될 예정

36) Executive Order 14266: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37) 백악관,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 Executive Order," 2025. 4. 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modifying-reciprocal-tariff-rates-to-reflect-trading-partner-retaliation-and-alignment/>, 검색일자: 2025. 7. 23.

38)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Discuss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39) 미국은 동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미중 경제 관계에서 존재하는 비상호성 문제 등의 논의의 진행은 비상호적인 무역 구조를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significant steps)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언급

40)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決算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4/ke070731.pdf, 검색일자: 2025. 7. 31.

41)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잉여금 중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 연도까지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034?hit_toc=TOC%252CSp%255B7%255D%252CSp%255B9%255D#TOC, 검색일자: 2025. 7. 31.)

표 8 일본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비고
1. 세입 결산총액(수납완료 세입액)	1,359,808	
2. 세출 결산총액(지출완료 세출액)	1,230,239	
3. 재정법 제41조1) 잉여금	129,568	(1-2)
4. 2023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4년도 신규발생잉여금	129,568	(3-4)
6. 2025년도로 이월되는 세출예산재원으로 순 잉여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102,432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27,136	(5-6)
(1) 세입 순 증가액	-15,973	
① 세수	17,970	
② 세외수입	16,055	
③ 공채금	-50,000	
(2) 세출 불용액	43,109	
기초연금 기여금(抛出金) 등 연금특별회계에 편입	18,405	
개호보험제도 운영추진비	4,668	
예비비	3,150	
기타	16,884	
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으로 순 잉여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4,490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4,354	
(2) 공항정비 사업비 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7	
(3) 부흥 비용 및 부흥채 ²⁾ 상환 비용 재원(부흥분(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이월분 및 2024년도분)에 대한 잉여금)	129	
(4)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³⁾ 이행 비용 재원(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비용분(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잉여금)	-	
9. 재정법 제6조에 의한 순 잉여금	22,645	(7-8)

- 주 1)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킨다(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https://laws.e-gov.go.jp/law/322AC0000000034?hit_toc=TOC%252CSp%255B7%255D%252CSp%255B9%255D#TOC, 검색일자: 2025. 7. 31.)
- 2) 부흥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됨(출처: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5. 7. 31.)
- 3)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업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원재료에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원칙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함(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https://laws.e-gov.go.jp/law/505AC0000000032#Mp-Ch_2, 검색일자: 2025. 7. 31.)
1. 세외수입에는 부흥분(2011년도 제1·2차 추경예산 이월분) 14억엔 포함
2. 단위 미만 절사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決算概要」, pp. 1-2, 2025. 7. 31.



독일

- ◆ 독일 연방 통계청, 2025년 1분기 공공채무 통계 발표 (2025. 7. 8.)⁴²⁾
 - 2025년 1분기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규모는 총 2조 5,233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4년 말 대비 143억유로(0.3%) 증가한 수준
 - 2024년 말 대비 2025년 1분기 채무 수준은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사회보장 부문은 소폭 감소
 - 2025년 1분기 연방정부 채무는 2024년 말 대비 7억유로(0.0%) 증가
- ▶ 독일 연방군 특별기금의 채무가 29억유로(12.8%) 증가하여 259억유로를 기록
 - 2025년 1분기 주정부 채무는 6,154억유로로 2024년 말 대비 86억유로(1.4%) 증가
- ▶ 2024년 말과 비교하여 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는 작센 주(16.5%)로 기존 국고채 재차입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에 기인
 - 2025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4년 말 대비 50억유로(3.0%) 증가한 1,744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50만유로 감소한 3,820만유로를 기록

표 9 독일의 2025년 1분기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총 채무 규모		변화율
	2025년 3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대비
합계	2,523,308	2,508,985	0.57
연방	1,733,417	1,732,698	0.04
경제안정화기금(코로나19)	22,019	22,059	-0.18
연방군 특별기금	25,913	22,978	12.77
주정부	615,441	606,882	1.41
지방자치단체	174,412	169,366	2.98
사회보장	38	39	-1.31

주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의 채무는 2023년말부터 종료되어 연방정부 핵심예산으로 이관됨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Statistischer Bericht - Vierteljährliche Schulden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 1. Vierteljahr 2025,"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Finanzen/Schulden-Finanzvermoegen/Publikationen/Downloads-Schulden/statistischer-bericht-vj-schulden-oeffentl-gesamthaushalt-2140520253215.xlsx?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5. 7. 9.

42) 독일 연방 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im 1. Quartal 2025 um 0,6 % höher als Ende 2024," 2025. 7. 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7/PD25_247_713.html, 검색일자: 2025. 7. 9.

- ◆ 독일 연방정부, 독일 중기재정구조계획(Mittelfristigen Finanzpolitisch-Strukturellen Plan, FSP) 채택(2025. 7. 16.)⁴³⁾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2%에서 2025년 1.0%, 2026~2028년 평균 0.7%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개선됨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국방 및 인프라 공공투자 확대 등이 경제 회복에 기여
 - 물가상승률은 2024년 2.2%에서 2025년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에너지 가격 및 공급망의 안정화, 내수 회복 등에 기인

- (재정전망)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4년 1.5%에서 2025년 1% 미만으로 개선되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024년 64%에서 2028년 62%까지 하락할 전망
 - 위기 대응 관련 조치가 종료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 축소에 기여할 전망
 -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역시 투자 관련 지출이 채무제한 규정의 예외조항(Nationale Ausweichklausel)⁴⁴⁾으로 적용되어 정부채무 증가를 일정 부분 상쇄

표 10 독일 국가재정구조계획 내 주요 경제 및 재정지표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실질 경제성장률					
국가예외조항 적용	0.5	1.4	1.1	1.0	1.0
국가예외조항 미적용	0.9	1.0	0.8	0.8	0.8
재정수지					
국가예외조항 적용	-2.9	-2.8	-2.3	-1.6	-1.0
국가예외조항 미적용	-3.3	-3.8	-3.2	-2.5	-1.8
국가채무					
국가예외조항 적용	63.8	64.8	64.5	63.8	62.6
국가예외조항 미적용	63.9	65.5	66.5	66.9	66.5
순지출증가율					
국가예외조항 적용	3.1	3.0	2.7	2.1	2.0
국가예외조항 미적용	4.4	4.5	2.3	1.7	1.6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Deutscher mittelfristiger finanzpolitisch-struktureller Plan für den Zeitraum 2025 bis 2029, 2025, Tabelle 4, Tabelle 5, Tabelle A1, Tabelle B1 토대로 작성

43) 독일 연방정부, "Starkes Signal für Wachstum und solide Staatsfinanzen," 2025. 7.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mittelfristige-finanzpolitisch-struktureller-plan-fsp-2365156>, 검색일자: 2025. 7. 21.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r mittelfristiger finanzpolitisch-struktureller Plan," 2025. 7.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mittelfristiger-finanzpolitisch-struktureller-plan.html, 검색일자: 2025. 7. 21.

44) 유럽연합의 안정성장협약에서 특별하고 비상적인 상황에 일시적으로 재정규칙의 유연성을 허용하는 조항이며, 2025년 3월 유럽 내 방위 강화 결정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 조항은 4년간 GDP의 1.5%까지 유연성을 허용

- (순 지출경로) 독일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국방 및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순지출 증가율을 각각 4.4%, 4.5%로 설정하고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2029년 1.6%까지 감소시킬 계획
- EU의 재정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회복과 안보 강화를 병행하려는 전략이며, 2027년부터 순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하여 중장기 건전성 회복경로로 전환
- (재정정책 방향) 독일 정부는 2025년 이후 재정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구조개혁, 재정건전화로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다양한 핵심 법안을 마련
- ◆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⁴⁵⁾ 제32차 회의 개최(2025. 7. 17.)⁴⁶⁾
- (주요 논의)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조기총선으로 인해 연기된 중기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의견을 채택
- 독일의 중기재정구조계획 기간(2025~2029년) 중 초기 2년은 투자 수요로 인해 높은 순 지출 증가율을 허용하고, 2027년부터 점진적인 긴축과 재정건전화 경로로 전환할 예정
 - ▶ 순 지출 증가율은 2025년 4.4%, 2026년 4.5%, 2027년 2.3%, 2028년 1.7%, 2029년 1.6%
 - ▶ 순 지출 경로는 독일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개혁 및 투자패키지와 병행
 - 안정화위원회는 해당 경로의 실제 이행 가능성은 10월 제출 예정인 국가재정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EU 안정성장협약 내 예외 규정의 유연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 정부가 제시한 계획은 높은 성장을 가정 등 다소 낙관적인 전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지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세입기반 확대, 투자중심의 성장전략 추진 등의 조치가 필수적
 - 순 지출 증가율 상한의 준수는 EU의 재정 안정 유지 역할을 위해 필수적이며, 향후 설립될 채무제한 개혁 전문가위원회는 EU 재정규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45) 독일의 재정 안정화 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주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하여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46)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32. Sitzung am 17. Juli 2025," 2025. 7. 17., https://www.stabilitaetsrat.de/DE/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_node.html, 검색일자: 2025. 7. 21.



프랑스

예산·결산 등

- ◆ 프랑스 고용·보건·연대·가족장관 등,⁴⁷⁾ 예산안 집행 및 편성 관련 제2회 비상사태 대책 위원회⁴⁸⁾ 소집(2025. 6. 26.)⁴⁹⁾
- (배경)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신임 당시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서 2025년 예산안 채택을 선정하였으며,⁵⁰⁾ 해당 기조하에 예산 집행 및 차기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대책 위원회가 소집됨
- (주요 내용) 2025년 재정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나, 이를 위해 추가 지출 감축이 필요하여 50억유로 규모로 지출 감축 시행 결정
 - (지출 감축) 약 50억유로의 추가 지출 감축 항목은 다음과 같음
 - ▶ (예산 유보) 국가 예산 중 30억을 유보 상태로 동결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춰 새로운 예산 집행 상한선을 설정
 - ▶ (건강보험 지출 부문 감축) 건강보험기금(CNAM)의 권고⁵¹⁾의 이행을 기본으로 하여 17억유로 건강보험 지출 감축

- ◆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혁명 국경일 군 연설에서 국방 예산 증액 기조 발표(2025. 7. 13.)⁵²⁾
- 국방예산을 2017년 대비 2배 증액하는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기존 계획에서 수정하여 2027년까지 달성으로 계획 수정
- 국방 예산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 군사계획법을 개정하고 2026년 및 2027년에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은 프랑스 총리가 향후 발표할 계획으로 구체화 될 예정
 - 2026년과 2027년 각각 35억유로, 30억유로 추가 국방예산이 배정될 예정
 - 재원 조달 방침은 프랑스 총리가 2025년 7월 15일 발표할 다개년 재정계획에 포괄됨
-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예산 증액이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

47) 캐서린 보트랭 고용·보건·연대·가족장관, 에릭 롬바르 경제·재정·산업주권·디지털 장관, 프랑수아 레브사멘 영토 관리·지방분권 장관, 이멜리 드 몽살랭 공공회계 담당 특임장관

48) 비상사태 대책위원회(comité d'alerte)는 담당 장관, 국회의원, 지방 선출직 대표, 사회보장기금 대표, 관련 산업 및 노동계 실무자 대표, 기타 기관(회계감사원, 중앙은행, 통계청 등) 대표 등으로 구성

49)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주권·디지털부, "Deuxième comité d'alerte des finances publiques : des décisions claires pour tenir les engagements budgétaires de la France," 2025. 6. 26., <https://presse.economie.gouv.fr/deuxieme-comite-dalerte-des-finances-publiques-des-decisions-claires-pour-tenir-les-engagements-budgetaires-de-la-france/>, 검색일자: 2025. 7. 7.

50) 바이루 총리 신임 당시 개혁 및 정책 방향 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5), 2025년 1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5. 2. 10., p. 39,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67>

51) 의료서비스 보험금 지급액 인상 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가 인하, 기존 예산 유보분(mises en réserve)을 지출 취소

52) 엘리제궁, "Discour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x armées depuis l'Hôtel de Brienne," 2025. 7. 13.,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5/07/13/discours-aux-armees-depuis-lhotel-de-brienne> 검색일자: 2025. 7. 24.

- ◆ 프랑스 예산국, 2026년 예산법안의 지출한도 보고서 발표(2025. 7. 15.)⁵³⁾
- (개요)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예산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표하는 연례 보고서로, 예산국과 부처 간 진행된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지정 회계연도의 예산법안에서 준수해야 할 미션별 지출 한도를 설정⁵⁴⁾
- (예산안 계획) 2026년 예산으로 할당된 미션지출 합계는 3,521억유로로 전년 대비 24억유로 증가
 - 재정적자 축소와 국방 및 공공안전 강화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부문에 걸쳐 예산을 절감 혹은 동결하였으나, 국방 및 안보 등 핵심 분야는 예외적으로 증액
- (향후 전망 및 목표) 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으로 2026년 4.6%에 이어 2029년에 3% 이하 진입을 목표로 함
 - 2026년 일반정부 공공지출은 전년 대비 자연적 증가 가정 시 1조 7,520억유로로 전망되었으나, 결정된 최종지출상한 목표는 300억유로 절감한 1조 7,220억유로로 설정

기타

- ◆ 프랑스 회계감사원, 공공재정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발표(2025. 7. 2.)⁵⁵⁾
- (개요) 프랑스 공공재정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례보고서로, 2023년 및 2024년의 현황과 2025년 이후 전망을 분석하며, 적자와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공
- (정부 공표 재정 현황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 감사원은 프랑스의 2023년 및 2024년 재정적자가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낙관적인 경제성장 및 세입 전망, 구조적 지출 통제 미흡에서 기인했다고 평가
 - (재정적자) GDP 대비 2023년 5.4% 및 2024년 5.8%에 상응하며, 각 수치는 과거 전망 및 목표⁵⁶⁾ 대비 2023년은 0.5%p, 2024년의 경우 0.7%p 증가한 수치임
 - (재정수입) 사회보장제 제외 세입 항목 전반에 걸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침

표 11 프랑스 2025년 부문별 지출 추이

(단위: 십억유로)

부문	2025년	2026년	증감분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660	682	22
지방정부	340	338	-2
사회보장	800	809	9
일반정부 단위 합계	1,693	1,722	29

주 중앙정부의 지출은 미션지출 이외에도 이차지출 및 EU 및 지자체 이전금 등을 포함

출처 프랑스 예산국, "lafonds de dépenses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2025. 7. 15.

53) 프랑스 예산국, "Plafonds de dépenses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6," 2025. 7. 15.

54) 프랑스 예산과정 편성 순기는 다음 내용을 참고(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le-projet-de-loi-de-finances-comment-camarche>, 검색일자: 2025. 7. 26.)

55)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2025. 7. 2.,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a-situation-et-les-perspectives-des-finances-publiques-16>, 검색일자: 2025. 7. 7.

56) 과거 전망치의 기준은 2023년의 경우 2023-2027 중기재정법안(LPFP 2023-2027), 2024년은 2024년 안정화프로그램인

- (재정지출) 지방정부와 사회보장행정의 지출 증가로 이자지출과 예외적 지출(dépenses exceptionnelles)을 제외한 공공부문 핵심 지출이 실질 기준 전년 대비 2.7% 증가
 - ▶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지출 증감률은 실질 기준 중앙정부(État) -0.5%, 기타 중앙행정기관(ODAC) -2.1%에 상응
 - ▶ (지방정부) 투자 지출 증가와 공공 일자리 급여 인상 조치에 의해 실질 기준 2.7% 지출 증가
 - ▶ (사회보장행정) 지출규모가 실질 기준 3.3% 증가했으며, 이는 2023년 연금 및 가족수당⁵⁷⁾ 물가 조정분 반영 및 외래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초과 지출 등에 기인
- (정부의 재정전망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 감사원은 2025년 예산법, 2025년 중기재정계획 연례 추진 보고서, 2023-2027 중기재정법안 등을 검토한 결과 향후 재정전망의 실현 가능성 저조와 전망이 근거하는 재정정책과 조치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
 - (2025년) 감사원은 2025년 재정적자 감소 전망이 낙관적인 세입 전망과 일시적이며 구조적 효과가 불확실한 증세 조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평가
 - (2026년 이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아래로 유지하는 정부의 현 재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050억유로 규모의 조치⁵⁸⁾가 필요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
- ◆ 프랑스 총리, 지출 절감 및 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 다년간 재정 계획 발표(2025. 7. 15.)⁵⁹⁾
 - (개요) 2026년 예산안 편성 흐름 및 재정 목표 관리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향후 계획을 발표
 - (재정목표 이행 계획) 2026년에 438억유로 지출 절감 및 재정적자 GDP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실행될 대표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 (2026년 예산) 이자 비용 납부 및 국방 예산 추가 지출 제외 2025년 대비 지출수준이 증가하지 않도록 2026년 지출규모 설정
 - (지출 동결) 사회보장수당 및 공무원 임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물가 비연동 등 공백의 해(année blanche) 시행
 - (공무원수 감축) 은퇴 공무원 3명당 1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규정을 도입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3,000개 감축 목표
 - (의료지출 관리) 의료비 자기부담금(franchise médicale) 상한 인상, 병가 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 강화 등
 - (증세) 퇴직연금 소득세 부과 시 적용되는 10% 정률 소득 공제를 고소득 은퇴자 대상으로 정액 공제 전환, 초부유층에 대한 차등 연대기여금 부과,⁶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형 소포 및 택배에 세금 부과

57) 가족수당(Presations Familiales)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보육 지원을 받거나,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사회 보장 제도를 의미(출처: 프랑스 사회보장포털, <https://www.securite-sociale.fr/la-secu-cest-quoi/organisation/les-branches>, 검색일자: 2025. 7. 23.)

58)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공공지출 실질 규모 연평균 0.2% 감소와 2025년 GDP 대비 0.8%p 수준의 증세 조치를 가정

59) 프랑스 정부, "Dettes et hausse de la production : les annonces de François Bayrou," 2025. 7. 16., <https://www.info.gouv.fr/actualite/dettes-et-hausse-de-la-production-les-annonces-de-francois-bayrou>, 검색일자: 2025. 7. 16.

60) 발표된 계획의 맥락상 초부유층에 대한 차등 연대기여금(contribution différentielle sur les hauts revenus)은 기존에 존재하던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 연대기여금(CEHR, Contribution exceptionnelle sur les hauts revenus)과 구별되는 신규 세목으로 추정

- (생산성 제고 계획) 총리는 프랑스 산업 및 노동계 전반의 생산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생산성 제고 계획을 제안
 - (노동개혁) 부활절 다음 월요일 휴일과 전승기념일(5월 8일) 공휴일 취소, 재취업 속도 촉진을 위한 실업보험 개혁, 통합사회보장수당(allocation sociale unifiée, ASU) 신설
 - (구조 개혁) 보조금 감면 추진, 관료적 절차 축소 및 간소화
- (경쟁력 제고)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 및 수력 발전 투자 재개, 기업 간 대금 지급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행정처분 요율 인상 등으로 경제 유동성 공급
- (혁신 및 개혁) 프랑스2030을 통한 인공지능 및 사이버 부문 투자 지속, 프랑스 공공구매지원기관(UGAP) 개혁 등



영국

예산·결산 등

- ◆ 영국 재무부, 2023-24회계연도 공공부문 통합 결산 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3-24*)⁶¹ 발표(2025. 7. 17.)⁶²
 - (당기 순지출) 2023-24회계연도 당기 순지출은 1,466억파운드로 전년도 -146억파운드 대비 1,612억파운드 증가(〈표 12〉 참고)
 - (공공서비스 순지출) 564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027억파운드 감소
 - (장기 부채 금융 비용) 82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2,248억파운드 증가
- (순부채) 2023-24회계연도의 순부채는 2조 3,732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59억파운드 감소(〈표 13〉 참고)
 - (총자산) 2조 6,513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970억파운드 증가
 - (총부채) 5조 24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811억파운드 증가
- (회계감사 의견)⁶³ 국가감사원은 2022-23회계연도에 이어 2023-24회계연도에도 의견거절(disclaimed)을 제시

61)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기관, 위임 행정부, NHS, 공기업, 아카데미 학교(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학교) 등 1만개 이상의 기관 계정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

62)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3-24," Policy paper, 2025. 7. 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3-24>, 검색일자: 2025. 7. 21.; National Audit Office, "Spending watchdog disclaims government's accounts again," Press release, 2025. 7. 17., <https://www.nao.org.uk/press-releases/spending-watchdog-disclaims-governments-accounts-again/>, 검색일자: 2025. 7. 21.

63) 국가감사원(NAO)은 공공부문 통합 결산보고서 내에 포함된 통합 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에 대해 적정의견(unmodified), 한정의견(qualified), 의견거절(disclaimed) 등의 감사 의견을 동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제시

- 이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sufficient appropriate audit evidence)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 미비 및 자료 미제출이 주요 원인

- (향후 개선 방향) 재무부는 통합 결산 보고서의 품질과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4대 개선 방향을 제시

표 12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항목	2022-23	2023-24
공공서비스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	1,133.6	1,076.3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76.1	311.4
인건비(Staff costs)	306.7	240.5
재화, 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254.3	263.7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122.4	104.1
감가상각 및 감손(Depreciation and impairment)	52.8	64.2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85.1	63.4
기타(Other)	36.2	29.0
공공서비스 총수입(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b]	974.5	1,019.90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857.7	888.8
기타수입(Other revenue)	116.8	131.1
공공서비스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b]	159.1	56.4
장기 부채 금융 비용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c]	-141.9	82.9
금융 자산 부채의 재평가 (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d]	-31.8	7.3
당기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 [a-b+c+d]	-14.6	146.6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3-24*, 2025. 7., p. 132, 재구성

표 13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항목	2022-23	2023-24
총자산(Total assets) [a]	2,554.3	2,651.3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435.3	1,539.1
기타 금융자산(Other financial assets)	721.1	707.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Trade and other receivables)	232.9	239.1
기타 자산(Other assets)	165.0	165.5
총부채(Total liabilities) [b]	4,943.4	5,024.5
공공부문 연금(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1,415.0	1,311.9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s)	1,754.0	2,020.0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1,251.2	1,202.1
충당금(Provisions)	306.9	262.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216.3	228.3
순부채(Net liabilities) [b-a]	2,389.1	2,373.2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3-24*, 2025. 7., pp. 134-135, 재구성

- (발표 일정 정상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표 시기를 복원하고, 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 (데이터 누락 해소) 지방정부 기관의 감사 지연으로 인한 데이터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제출기한(backstop dates)을 설정하여 제출물을 개선
- (한정의견 원인 해소) 회계정책 불일치 등 한정의견(qualified) 사유가 되는 문제들도 단계적으로 해결
- (지속적 개선) 의회와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개발, 데이터 공개 확대,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추진
- 트리플 락(Triple Lock) 제도⁶⁶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국가연금 지출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 국가연금 지출은 20세기 중반 GDP 대비 약 2%에서 현재 약 5%(1,380억파운드)로 증가하였고, 2070년대 초까지 약 2.7%p 증가한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자동가입 확대로 민간연금 가입률이 2012년 42%에서 2023년 86%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일부 그룹(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은 민간연금을 통해 적절한 은퇴 소득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 존재
 - ▶ 저소득층의 경우, 약 80%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중 3분의 1은 최소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기타

- ◆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5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5)⁶⁴ 발표(2025. 7. 8.)⁶⁵
 - (개요) 2025년 보고서에서는 연금제도,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재정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
 - (연금제도) 연금제도의 구조와 향후 추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압박과 위험을 야기
 - ▶ 전체 연금부문 국채 보유는 2024-25회계연도에 GDP 대비 29.5%(DB형 26.7%p, DC형 2.8%p)에서 2070년대 초 10.9%(DB형 5.6%p, DC형 5.3%p)로 18.6%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채무준칙 지표를 공공부문 순채무에서 순금융 부채로 변경함에 따라 순금융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transaction), 가치평가 변화(valuation change) 등이 중기전망에 위험이 될 수 있음

64) 예산책임청(OBR)은 2011년부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2017년부터는 '재정 위험 보고서(Fiscal risks report)'를 각각 발간해 왔으나, 2022년부터 이를 통합한 동 보고서를 매년 발표. 기존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공공재정 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재정 위험 보고서'는 재정에 위험이 되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

65)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5," Publications, 2025. 7. 8., <https://obr.uk/frs/fiscal-risks-and-sustainability-july-2025/>, 검색일자: 2025. 7. 16.

66) 평균 임금(average earning)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국가연금을 인상하는 제도. 2010년 당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의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도입되어 2011-12회계연도부터 시행

- 과거 순금융 부채의 변화는 주로 순차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연금기금의 자산 및 부채, 학자금 대출, 공공금융기관의 지분·대출·보증 등 다양한 금융거래도 주요 요인
- 주식, 외환자산의 시가 변화 등으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가치가 변화되고, 이는 순금융 부채의 변동을 야기
 - ▶ 공적연금 부채 평가 시 할인율 1%p 변동, 공적연금 및 정부 지분자산의 시장가치 10% 하락, 정부 대출자산(학자금 대출 제외)의 가치 30% 하락의 경우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세 가지 충격으로 2025~26회계연도 순금융 부채는 GDP 대비 1.0~2.6%p까지 증가
-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감축(mitigation), 피해(damage), 적응(adaptation),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공공재정에 위협을 야기
 - (감축)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탄소중립(Net Zero)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재정 비용 발생
 - ▶ 2050~51회계연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총 8,030억파운드(GDP의 21%), 연평균 300억파운드의 재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피해) 고온과 극단적 기후 현상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며 복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
 - ▶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C 상승할 경우, 기후피해로 인해 2070년대 초까지 GDP 수준은 8% 감소하고 차입은 GDP 대비 2.0%, 채무는 56%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적응) 고온·기상이변에 대비해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부 대응 차원에서 비용 발생(냉각 시스템 및 홍수방지 시설 개선, 학교 및 병원 냉방 시스템 조정 등)



호주

- ◆ 호주 정부, 학자금 대출 감축 법안 의회 제출(2025. 7. 23.)⁶⁷⁾
- (배경) 호주는 2025-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호주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90억호주달러⁶⁸⁾ 규모의 학자금 대출 감축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호주 정부는 2025년 7월 23일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 및 기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부채를 20% 감면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 (감면대상) HELP, VET Student Loan,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 등 모든 정부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포함

67) 호주 총리실 보도자료, "Albanese Government introduces legislation to cut student debt by 20 per cent," 2025. 7. 23., <https://www.pm.gov.au/media/albanese-government-introduces-legislation-cut-student-debt-20-percent>, 검색일자: 2025. 7. 23.

호주 교육부, "20% reduction of student loan debt," 2025. 7. 23.,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20-reduction-student-loan-debt>, <https://www.education.gov.au/higher-education-loan-program/20-reduction-student-loan-debt/faqs-20-reduction-all-outstanding-help-loan-debt>, 검색일자: 2025. 7. 23.

68) 2025-26회계연도 현금주의 기준 일반정부 지출은 7,775억호주달러로 학자금 대출 감축에 소요되는 190억달러는 2025-26회계연도 총지출의 약 2.4% 수준

- (시기) 2025년 6월 1일 기준 존재하는 모든 학자금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20% 감면
- (규모) 약 300만명의 학생 대출자에 대해 총 160억호주달러 규모의 부채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
- ▶ 기존에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한 학자금 대출 관련 지수 개편⁶⁹⁾으로 30억호주달러의 추가 부채 축소
- (기타) 학자금 대출 20% 감면 외에도 학자금 대출 최소 상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54,435호주달러 →67,000호주달러)하는 등 개편안 내용 포함
- (법안 처리 일정)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2025년 7월 22일 이후 의회 개회 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



중국

예산·결산 등

- ◆ 중국 재정부, 상반기 재정수입 및 지출 현황 발표 (2025. 7. 25.)⁷⁰⁾⁷¹⁾
- (수입) 2025년 상반기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1조 5,56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중앙 및 지방) 중앙정부 수입은 4조 8,589억위안⁷²⁾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고, 지방정부 수입은 6조 6,97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표 14 2025년 상반기 중국 정부 일반공공예산 수입 현황

(단위: 억위안, %)

분류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공공예산 수입 합계	115,566	-0.3
중앙정부	48,589	-2.8
지방정부	66,977	1.6
조세수입	92,915	-1.2
세외수입	22,651	3.7

주 과세 수입' 하위 항목에 나열된 세목들은 중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의 전 세목을 포괄하지 않으며, 주요 일부 세목만을 표시함

출처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上半年财政收支情况」, 2025. 7. 25.,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507/t20250725_3968635.htm, 검색일자: 2025. 7.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69)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임금물가지수(WPI) 중 더 낮은 지수와 연동하도록 개편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소급 적용(출처: 「주요국 예산안-호주[2025-26회계연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4.)

70)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上半年财政收支情况」, 2025. 7. 25.,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507/t20250725_3968635.htm, 검색일자: 2025. 7. 28.

71)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年上半年财政收支情况新闻发布会文字实录」, 2025. 7. 25., https://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507/t20250725_3968586.htm, 검색일자: 2025. 7. 28.

72) 2025년 7월 28일 고시 환율 기준 1위안은 한화 약 194원

- (조세수입) 조세 수입은 9조 2,915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4월 이후 월별 세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여 세수 회복세 전망
 - ▶ 2025년 4월 이후 월별 세수 증가율은 4월 1.9%, 5월 0.6%, 6월 1%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2조 2,65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 ▶ 지방정부의 자산 다각화와 행정·공공기관의 국유자산 처분·임대·대여 수입 증가에 따른 유료 사용 수입 증가의 영향
- (지출) 중점 분야 지출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행하면서, 상반기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4조 1,27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 중앙정부 지출은 1조 9,91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지방정부 지출은 12조 1,35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 민생 안정과 관련한 핵심 지출 분야인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부문에서 지출액 증가가 가장 큰 영향
 - (기금 수입) 상반기 국가 기금 수입은 1조 9,44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 중앙정부 기금 수입은 2,71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지방정부 기금 수입은 1조 7,269 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
 - (기금 지출) 상반기 국가 기금 지출은 4조 6,2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 정부기금 예산에 포함되는 지방정부 특수채, 초장기 중앙정부 특수채, 중앙금융기관 특수채 등에서 지출한 2조 4,300억위안의 영향
 - (재정 운영 현황) 재정 정책 공급 및 자금 배분 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의 조속한 실현에 집중
 - (예산 발행 가속화) 상반기 중 지방정부에 9조 2,900억위안의 이전 지출을 실행하여, 실행진척도 전년 동기 대비 1.7%p 증가

표 15 2025년 상반기 중국 정부 일반공공예산 수입 현황

(단위: 억위안, %)

분류	지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공공예산 지출 합계	141,271	3.4
중앙정부	19,914	9.0
지방정부	121,357	2.6
주요 지출 항목		
교육비 지출	21,483	5.9
과학기술 지출	4,790	9.1
문화·관광·체육·미디어 지출	1,738	5.0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24,504	9.2
보건의료비 지출	11,004	4.3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지출	2,556	5.9
도시 및 농촌 지역사회 지출	10,036	4.2
농업, 임업, 수산업 지출	10,626	7.8
부채이자 지불	6,689	6.1

주 주요 지출 항목은 전체 지출 항목 중 일부만을 나열

출처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2025년上半年财政收支情况」, 2025. 7. 25.,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507/t20250725_3968635.htm, 검색일자: 2025. 7.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채권 활용) 양중(兩重)⁷³⁾ 및 양신(兩新)⁷⁴⁾ 정책 지원을 위해 6,583억위안의 초장기 중앙정부 특수채를, 국유상업은행의 기본 자본 확충 및 은행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5천억위안 규모의 중앙정부 특수채 발행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2조 6천억 위안 규모의 국채 및 특수채를 발행으로 중점 지역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
- (민생 보장 강화) 의료 보장 관련 보조금으로 5,522억위안을 지급하여 1인당 재정보조액을 인상하고, 최저생계 보장 및 극빈층 지원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보조금 1,566억 8천만위안 배정
- (고용 안정) 취업보조금 667억 4천만위안을 배정하여, 실업보험 환급금 인상,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취업 인턴십 보조금 조기 지급 등의 정책 시행
- (소비 진작) 양신 정책 지원 목적으로, 1,620억위안 규모의 초장기 중앙정부 특수채를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
- (지방 재정 지원 강화)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2조 7,300억위안 규모의 중앙정부의 균형 이전 지출 상반기 실행
- (국민총생산량) 중국의 상반기 GDP는 66조 536 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 (산업 수준별 구성) 1차 산업이 3조 1,172억위안, 2차 산업이 23조 9,050억위안, 3차 산업이 39조 314억위안을 차지
- (공업) 상반기 지정된 공업 기업의 전년 동기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은 6.5%⁷⁶⁾로 공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장비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이 각각 10.2%와 5.2%로 특히 빠른 성장세
- (서비스업)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5.5%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IT 등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발달이 뚜렷
- (소비재 판매) 소비재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5.0%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오래된 소비재를 새것으로 교환하는 양신(兩新) 정책 대상 제품군의 강한 증가세
- (무역) 상반기 상품 총 수출입 금액은 21조 7,876 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는 등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실업률)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도시 지역 실업률은 1분기 대비 0.1% 하락
- (국민소득) 상반기 전국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만 1,840위안으로,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

기타

◆ 중국 국가통계국, 2025년 2분기 국민경제활동지표 발표(2025. 7. 15.)⁷⁵⁾

73) 국가 중대 전략 및 정치 군사 금융 등 중점분야의 안보 능력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는 도시 가스, 배수 및 기타 지하 배관망과 오래된 도시 공동체 개조와 같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중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5. 3., p. 56)

74) 대규모 설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교체 관련 프로젝트로, 장비 갱신 대출 할인, 자동차 폐차 및 리뉴얼, 휴대폰, 태블릿 등 디지털 신제품 구매 보조금, 주택 개선을 위한 소비재 교체 지원 등이 포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5. 3., p. 56)

75)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上半年国民经济迎难而上, 稳中向好」, 2025. 7. 15., https://www.stats.gov.cn/sj/zxfb/202507/t20250715_1960414.html, 검색일자: 2025. 7. 22.

76) 부가가치 성장률은 모두 실질 성장률로 계산



스웨덴

-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잠정 R&D 지출 통계 발표 (2025. 7. 10.)⁷⁷⁾⁷⁸⁾
 - 스웨덴의 2024년 총 R&D 지출은 2,304억 크로나⁷⁹⁾로 2023년 대비 67억 크로나(3%)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 기준에서는 변동 없음
 - 실질 가격을 기준으로 한 부문별 R&D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 부문과 비영리 민간 부문은 감소하고 공공 부문과 대학 및 고등교육 부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로 측정된 R&D 집약도는 2024년 3.6%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대비 0.04%p 감소한 수치
- ◆ 스웨덴 외교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 발표(2025. 7. 1.)⁸⁰⁾
 -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수단, 가자지구, 예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스웨덴 주변국의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하여 외교부는 16.7억 크로나⁸¹⁾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
 - 스웨덴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원조를 줄이고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에 대한 예산을 확보
 - 스웨덴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유럽연합 및 타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규모
 - 현재는 예산 확보를 통한 포괄적 지원 방향만을 발표한 단계이며 세부 계획은 미정

77) 스웨덴 통계청, "Ingen ökning i FoU-utgifterna under 2024," 2025. 7. 1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forskning-och-det-digitala-samhallet/forskning-och-utveckling/forskning-och-utveckling-i-sverige/pong/statistiknyhet/forskning-och-utveckling-i-sverige-2024---preliminar-statistik/>, 검색일자: 2025. 7. 21.

78) 스웨덴 통계청, "Forskning och utveckling i Sverige 2024 - Preliminär statistik," 2025. 7. 10., <https://www.scb.se/hitta-statistik/statistik-efter-amne/forskning-och-det-digitala-samhallet/forskning-och-utveckling/forskning-och-utveckling-i-sverige/pong/publikationer/forskning-och-utveckling-i-sverige-2024---preliminar-statistik/>, 검색일자: 2025. 7. 21.

79) 2025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3조 3,826억 5,600만원

80) 스웨덴 외교부, "Regeringen frigör närmare 1,7 miljarder kronor för ökat stöd till Ukraina och humanitära insatser," 2025. 7. 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7/regeringen-frigor-17-miljarder-kronor-for-okat-stod-till-ukraina-och-humanitara-insatser/>, 검색일자: 2025. 7. 28.

81) 2025년 7월 2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419억 1,620만원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12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간
재정포럼
Vol.350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8월 18일 발행 | 제350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8